

제419회 국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록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쳐

일 시 2024년12월17일(화)

장 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4)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9)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3)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4)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3)
-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8)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6)
-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3)
- 지방행정체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3)
- 지방행정체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6)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9)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4)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3)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5)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9)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9)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6)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8)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2)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3)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0)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5)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2)

- 
-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6)
  -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2)
  -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6)
  - 3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 3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7)
  -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9)
  -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0)
  -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1)
  -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2)
  -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2)
  -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2)
  -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0)
  -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0)
  -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1)
  -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8)
  -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3)
  -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1)
  -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3)
  -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0)
  -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8)
  -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1)
  -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7)
  -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6)
  -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4)
  -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1)
  -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6)
  -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3)
  -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0)
  -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2)
  -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8)
  -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9)
  -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5)
  -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7)
  -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5)
  -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4)
  -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8)
  -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8)

- 
-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1)
  -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7)
  -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5)
  -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8)
  -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2)
  -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1)
  -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2)
  -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5)
  -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3)
  -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3)
  -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1)
  -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6)
  -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9)
  -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4)
  -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1)
  -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5)
  -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3)
  -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2)
  -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6)
  -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5)
  -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4)
  -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3)
  -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4)
  -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6)
  -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7)
  -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2)
  -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0)
  -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천하람 의원·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111)
  -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0)
  -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6)
  -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1)
  -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6)
  -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1)
  -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4)
  -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5)
  -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1)
  -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7)

-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7)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6)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1)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141)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8)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3)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4)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8)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5)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4)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9)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6)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0)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2)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6)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9)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9)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8)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6)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9)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6)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1)  
 1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8)  
 12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3)  
 12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5)  
 12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1)  
 12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7)  
 12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0)  
 13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6)  
 13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4)
- 

### 상정된 안건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4) ..... 8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9) ..... 8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3) ..... 8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4) ..... 8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3) ..... 8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8) ..... 8

---

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6)	8
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3)	8
9.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63)	8
1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6)	9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9)	9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4)	9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3)	9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9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9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5)	9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9)	9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9)	9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6)	9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8)	9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2)	9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3)	9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0)	9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9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5)	9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2)	9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6)	9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2)	9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9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6)	9
3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9
3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7)	9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9)	9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0)	9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1)	9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2)	9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2)	9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2)	9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0)	9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0)	9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1)	9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8)	9

---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3) .....	9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1) .....	9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3) .....	9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0) .....	9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8) .....	10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1) .....	10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7) .....	10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6) .....	10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4) .....	10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1) .....	10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6) .....	10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3) .....	10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0) .....	10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2) .....	10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8) .....	10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9) .....	10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5) .....	10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7) .....	10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5) .....	10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4) .....	10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8) .....	10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8) .....	10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1) .....	10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7) .....	10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5) .....	10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8) .....	10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2) .....	10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1) .....	10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2) .....	10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5) .....	10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3) .....	10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3) .....	10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1) .....	10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6) .....	10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9) .....	10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4) .....	10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1) .....	10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5) .....	10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3) .....	10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2) .....	10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6) .....	10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5) .....	10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4) .....	10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3) .....	11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4) .....	11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6) .....	11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7) .....	11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2) .....	11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0) .....	11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천하람 의원·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1) .....	11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0) .....	11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6) .....	11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1) .....	11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6) .....	11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1) .....	11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4) .....	11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5) .....	11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1) .....	11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7) .....	11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7) .....	11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6) .....	11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1) .....	11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141) .....	11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8) .....	11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3) .....	11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4) .....	11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8) .....	11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5) .....	11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4) .....	11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9) .....	11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6) .....	11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0) .....	11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2) .....	11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6) .....	11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9)	11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9)	11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8)	11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6)	11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9)	11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6)	11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1)	12
1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8)	12
12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3)	12
12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5)	12
12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1)	12
12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7)	12
12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0)	12
13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6)	12
13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4)	12

(10시)07분 개의)

○ 소위원장 윤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1소위는 오늘부터 이틀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와 관련된 총 131건의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회의는 의사일정과 소위 심사자료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각 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 정부 측 답변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여러 소위 자료로 나누어져 있고 각 소위 자료의 안건과 내용이 서로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의결은 모든 지방세 관계법 심사가 끝난 후에 일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4)
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9)
3.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3)
4.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4)
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33)
6.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8)
7.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6)
8.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3)
9.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4)

번호 2200263)

10.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6)
1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69)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4)
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3)
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5)
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9)
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9)
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6)
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8)
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2)
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3)
2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0)
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3)
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5)
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02)
2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26)
2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362)
2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6)
3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6)
31.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3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7)
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9)
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0)
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1)
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82)
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2)
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42)
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80)
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00)
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11)
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8)
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43)
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1)
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73)
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0)

- 
- 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8)
  - 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61)
  - 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7)
  - 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6)
  - 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94)
  - 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1)
  - 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6)
  -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3)
  -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0)
  -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2)
  -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8)
  -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9)
  -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5)
  -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7)
  -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5)
  -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4)
  -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8)
  -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8)
  - 6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1)
  - 6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7)
  - 6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5)
  - 6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8)
  - 6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2)
  - 7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1)
  - 7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2)
  - 7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35)
  - 7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3)
  - 7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3)
  - 7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1)
  - 7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6)
  - 7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9)
  - 7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4)
  - 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1)
  - 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5)
  - 8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83)
  - 8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2)
  - 8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6)
  - 8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5)
  - 8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4)

- 
- 8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3)
  -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4)
  -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6)
  -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7)
  -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2)
  -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0)
  -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천하람 의원·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1)
  -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0)
  -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6)
  -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1)
  -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56)
  -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71)
  -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84)
  -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35)
  -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81)
  -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7)
  -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7)
  -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6)
  -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1)
  -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141)
  -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8)
  -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3)
  -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4)
  -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8)
  -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95)
  -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4)
  -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49)
  -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6)
  -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0)
  -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2)
  -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36)
  -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99)
  -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9)
  -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8)
  -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6)
  -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9)
  -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6)

- 
-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1)
  - 124.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8)
  - 125.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3)
  - 12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5)
  - 12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1)
  - 12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7)
  - 12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70)
  - 13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6)
  - 13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74)

(10시08분)

○**소위원장 윤건영** 의사일정 제1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31 항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13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를 위해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존경하는 윤건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행정안전부는 지역 민생 안정과 차질 없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설, 한파, 화재 등 겨울철 재난안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되는 지방세 관계법안의 경우 민생 안정과 국민의 납세 편의를 위해 연내 처리가 필요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행안부 법안 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충실히 법안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감사합니다.

지방세 관계법은 논의사항이 많은 만큼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하는 주제별로 끊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석전문위원께서 심사자료 제1권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소위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지방세기본법의 의의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지방세기본법의 목적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지방세 총칙법, 불복절차법 그리고 처벌법의 성격을 지니게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과세 성격에 따라서 보통세, 목적세로 구분이 됩니다. 목적세에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해당되겠습니다.

지방세 분류(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방세의 세율구조는 일정세율, 표준세율, 제한세율로 나뉘게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압류와 관련하여 압류금지 재산 등을 압류한 경우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음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다.

현행에 보시면 납세고지부터 압류까지 네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사유 중 압류에 있어서 압류금지 재산 등 압류 시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지입니다.

징수법상 압류금지 재산이나 압류 즉시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압류를 한 경우에는 압류가 무효가 돼서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를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는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국세기본법에서 동일한 규정이 있어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압류금지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의복, 침구, 인감도장, 족보, 제사 용품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시효 중단의 예외를 명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안 의견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7페이지 두 번째, 후발적 경정청구 표현 명확화입니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신고·납부 세목에만 해당되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표현을 명확히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두고 있습니다. 동 개정 내용은 단순 표현 변경으로서 규정의 효력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적용례를 두는 것이 오히려 기존 규정에 대한 해석상 오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용례 삭제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여러 가지 상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시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0페이지입니다.

이의신청 대리인 선임 시 특례가 부여되는 소액사건의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이의신청 대리인을 전문자격사가 아닌 친족 등으로 선임할 수 있는 소액사건의 금액을 현행 10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는, 소액사건의 이의신청 대리인을 친족 등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한 현행 규정의 취지는 대리인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를 요청하도록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입법 취지를 더욱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해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세 소액사건 기준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그리고 지방세 조세심판 소액사건 기준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다는 점, 행정심판은 모든 사건에 친족 선임이 가능하고 민사소송은 기준이 1억 원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대리인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것입니다.

정부안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이달희 위원** 잠깐만요.

○**소위원장 윤건영** 이달희 위원님.

○**이달희 위원** 우리 국민들 편리하게 하는 데 굳이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5000만 원까지 국세가 되어 있는데 5000만 원까지 높이면…… 뭐 특별한 그게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일단 국세는 세액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지방세인 경우에는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방세 관련 조세심판의 기준인 2000만 원으로 하는 것이 전체적인 쟁송 이의절차와 정합성이 있을 것 같아서 2000만 원으로 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2페이지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신청자격을 현행 개인 외에 법인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선정 대리인의 신청자격이 국선대리인에 비해 협소해서 이를 국선대리인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권익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취지 그리고 국세기본법상 국선대리인도 동일한 신청자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자체 선정 대리인 신청자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정부안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 안건은 18페이지입니다.

구속자 등에 대해서는 교정시설·유치장의 관서장에게 송달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구속자 등에게 서류 송달 시 그 주소·거소·영업소·사무소의 대리수령인에게 송달한 후에 대리수령인의 부재가 확인되어야 교정시설·유치장으로 송달할 수 있어서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및 국세기본법도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불필요한 행정비용 절감과 또 정확한 고지 송달을 위한 것입니다.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20페이지입니다.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산정 요소에 제도 개편 시 누락된 사항, 구(舊)가산금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요소를 보시면 구납부불성실가산세 그리고 구중가산금이 있습니다. 여기에 구가산금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는,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가 20년 12월 개정을 통해서 종전 지방세기본법상 납부불성실가산세와 지방세징수법상 가산금·중가산금이 통합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종전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가산금·중가산금 각각이 산정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통합이 되었어야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1페이지인데요. 20년 12월 개정 당시 누락된 사항을 시정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개정안이 신설하려는 구가산금은 신고·납부기간 도과 후 지자체가 직권 부과·고지한 납기를 준수시킬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안 의결을 희망합니다.

납부 지연, 납부가 지연되었을 때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구간에 일단 누락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강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29페이지입니다.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 신청상 필요시 과세정보 제공 허용입니다.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 제공 허용사유에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명령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열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개정안의 표에 보시면 사법경찰관 기소 전 몰수·추징정보전명령 신청상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현행법상 세무공무원에게는 과세정보의 제공·누설 또는 목적 외 사용 금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나 지방세기본법 또는 개별 법률상 근거가 있는 경우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추징정보전명령 신청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기소 전 몰수·추징정보전명령의 목적행위인 몰수·추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입법례가 이미 있다는 점, 기소 전 몰수·추징정보전명령의 실효성 제고는 몰수·추징의 실효성 제고로 이어져 범죄 예방·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과세정보 제공을 근거를 지방세기본법이 아닌 개별 법률에 명시한 입법례의 상당수는 개별 사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과세 제공정보를 한정하거나 요청 절차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소 전 몰수·추징정보전명령의 근거 법률을 개정해서 제공정보를 동 명령의 신청에 필요한 세목으로 한정하는 등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개정안은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추징정보전명령의 신청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세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이 지금 기재위 조세소위에 미회부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해당 법률안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우선 민감한 과세정보, 개인의 과세정보를 신중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고요. 수석전문위원 말씀처럼 관련 국세기본법이 현재 논의가 진행 중에 있고 구체적으로 다른 법률에, 예를 들어 마약류 불법거래라든지 공무원 범죄의 별도의 법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하게 절차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위성곤 위원** 보류하시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일단 보류?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54페이지입니다.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관련 규정 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특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함께 소득세와 과세 표준을 공유하고 세율도 그 10분의 1로 연동된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를 폐지해서 그 부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4년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

서 동 개정 내용도 원안 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해당 내용의 의결을 희망합니다.

금투세 지방소득세 폐지에 따른 그 부수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56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운영 관련 포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인데요. 행안부장관이 지방세 부과·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자체 및 공무원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포상의 유형 중 포상금은 개별법에 포상 근거가 명시될 경우 관련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은 동일한 포상 근거를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안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2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2권은 지방세징수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1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지방세징수법의 의의 부분인데요. 지방세징수법의 목적은 지방세 체납 등의 경우에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수입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 법에는 다양한 간접적 강제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우측 표를 보시면 체납처분 그리고 압류재산 매각 방법, 압류재산 매각 대행에 대해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레저세 징수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징수금액의 3%를 교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은 징수금액의 10% 이상을 규정하고 이것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경륜·경정·경마·전통소싸움 사업장 소재 시군구는 교통혼잡·소음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다른 세목보다 높은 비율의 징수교부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찬성 입장은 22년부터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자치단체는 레저세 수납액의 20%를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고 있으나 본장 소재 기초자치단체는 제외되고 있어서 교통혼잡·소음 등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반대 입장은 레저세는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행정비용이 작아서 현행 정수교부금으로도 이미 충분한 보전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특히 본장 소재 기초자치단체는 레저세 중 장외발매소 발생분 및 온라인 발생분의 50%가 본장 소재 광역자치단체에 안분되므로 그 수납업무를 위임받아 수납액의 3%의 정수교부금을 교부받고 있어서 다른 지자체 대비 충분한 재원이 교부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원 형식의 검토인데요.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정수비용 실비보전 목적의 정수교부금이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세수를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안분하는 제도인 지방재정법상 조정교부금을 확대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있어서도 적용례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이 안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일단 정수교부금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실비 보전 성격입니다. 정수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입법 취지에 좀 부합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17개 시도 모두 이 안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얘기처럼 본장 소재 기초자치단체는 장외발매소, 즉 그 자치단체 이외에서 발생되는 장외발매소 분과 온라인 분에 대해서도 정수교부금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건은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2페이지입니다.

공매 압류재산 매수인 제한 사유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농지법상 농지, 수산업법상 어업권 등 특정 압류재산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어업면허 등의 인허가를 통하여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매수를 할 수 있으나 공매 시 매수 제한의 근거가 행정안전부 예규에 규정되어 있어서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쉽게 할 수 있고 효력에 대한 논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국세 정수법은 이미 동일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관련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릴게요.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5페이지, 매각결정 관련 제도개선인데요.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맨 위의 동그라미입니다. 공매재산 낙찰 후 매각결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사유에 낙찰자가 매수가 제한된 자인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은 개찰 후 낙찰자가 다른 법령상 자격 미구비 시 매각결정 기한을 10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각결정 미이행 사유 추가 부분입니다.

현행법상 공매재산이 낙찰되면 낙찰자의 매입자격 등을 확인 후 매각결정 절차를 거쳐서 매각을 실시합니다. 매각결정 미실시 사유에 낙찰자가 매수제한자로 확인된 경우를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단순한 입법 불비를 시정하는 내용이고 국세징수법은 이미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매각결정 기한 연장 근거를 신설하는 부분입니다.

현행법상 매각결정은 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합니다. 그런데 낙찰자가 다른 법령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10일 이내 범위에서 1회 연기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 취지에서 말씀드렸듯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한은 14일인 점 그리고 국세징수법은 이미 동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법령상 자격의 취득이 낙찰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허가가 지연되는 경우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추가 연기를 허용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은 수익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 당시 매각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까지 일부 소급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제92조 2호의 경우에는 매각결정 미실시 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고요. 매수가 제한된 자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고.

2항에 보시면 지금 개정안은 '1회에 한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단서를 신설해서 '다만 낙찰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갖출 때까지 추가로 매각결정 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음, 20페이지에서는 개정안의 부칙은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보다는 소급을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국민들 권익의 보호가 더 잘될 것으로

보아서 ‘매각결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로 이렇게 적용례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공매재산의 매각결정과 관련된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추가로 매각결정 기일이 연기돼야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이 부분은 지금 일단 위원님께서 보시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기한은 최대 14일입니다. 그런데 1회에 한해서 10일로 연기하게 되면 이 법 자체의 그 기간과 불일치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이걸 언제까지 연기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 추가로 매각결정을 연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를 갖출 때 까지 추가로 연기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재량을 두어서 권리 보호를 강화하되 이걸 무한정 연기해 가지고 매각결정이 계속 지연되는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접점을 찾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21페이지입니다.

체납처분 중지 절차의 간소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현행은 중지 사전절차를 위해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고 또 1개월간 공고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공고를 삭제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로만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체납처분 중단은 재산 압류를 해제하는 수익적 행위라는 점, 압류 해제 시에는 그 권리자 등에 대한 통지 절차가 있어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고까지 실시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국세징수법이 이미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해당 의안의 의결을 희망합니다.

체납처분 중지는 납세자에게 수익적 행위이고 또 별도로 공지절차를 생략해도 납세자 권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24페이지입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건데요. 지방세기본법 제56조제1항제2호의2를 신설하려는 것에 연동해서 특별징수납부지연가산세 규정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 간 체계를 통일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권 보시면 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3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동 법의 의의인데요. 이 법의 목적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효율적 징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자체 재정 확충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외수입의 일부를 규정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옆의 표에 보시면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환급 절차를 명시하는 부분입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현행법상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환급에 대한 근거·절차가 부재한 점을 명시하려는 것인데요.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법체계상 재정수입 관련 규정은 아래 표에 보시는 것과 같이 부과·환급에 관한 법률과 체납처분에 관한 법률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은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환급규정이 미비한 개별 수입과목의 부과 근거 법률을 개정하거나 지방세외수입 전체에 대한 환급의 일반규정을 동 법이 아니라 지방재정법 등에 신설해서 관련 법체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신중 검토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의견처럼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에 관한 법률은 체납처분에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릴게요.

○위성곤 위원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달희 위원 다음 검토할 때까지 행안부가 전체적인, 아까 전반의 재검토가 필요하는데 좀 가지고 올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시간을 내년까지 가야 되는지……

○소위원장 윤건영 차관님, 이게 당장 말씀하셨던 관련 법체계 전반에 대한 검토의견을 낼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일단은 환급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세정 당국이 부과한 것을 다시 환급받는 거고요. 지금 있는 법체계는 정상적으로 부과한 것을 체납했을 경우에 현재 이 법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급하고 체납의 성격이 좀 다른 것이 현재 법안의 논의로 올라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체납처분법이 환급에 다시 적용될 수 있는지는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체계 전반적으로 논의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세금과 달리 여러 가지 부담금, 부과금 이것들에 대한 환급을 어떻게 할지는 사실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세외수입, 세금 외의 것들이 저희가 한 119 종 정도가 있습니다. 각기 다른 법률에 여러 가지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담금, 분담금 이런 것들이 각 개별 법률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고민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지적은 저희도 충분히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배준영 위원님.

○**위성곤 위원** 법리적 체계……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 배준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배준영 위원** 말씀하신 김에 먼저 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법리적 체계가 맞지 않다는 얘기인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일단 우선적으로는 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이 법에서 논의할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배준영 위원** 저는 정부하고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전부 동의하면서요 제가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한 말씀만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22년 기재위 국정감사 당시 국세청이 잘못 걷어서 되돌려준 세금이 5년간 30조 500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미수령 환급금으로 관리한 세금이 4000억 원에 달한다는 질의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급금은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니까 미수령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철저하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견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보류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고요.

다만 차관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관련 법체계와 관련해서는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행안위에 한번 논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 8페이지입니다.

사해신탁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자체장이 취소소송·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인 사해행위에 사해신탁이 포함됨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신탁법상 사해신탁은 이미 사해행위의 일환으로서 현재도 지자체장은 사해신탁에 대한 취소소송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관련 법률 간 통일성을 제고하고 국

민의 이해를 쉽게 하는 차원에서 이를 명시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의견을 희망합니다.

국세징수법과 동일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제가 사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요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설명해 주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것처럼 사해행위, 민법상에 있는 규정인데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함이 있음을 알고 해당 재산을 은닉·양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산을 빼돌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위성곤 위원** 이 용어는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고 법률적 용어로서만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그리고 법률의 편의성 차원에서 아마 용어를 좀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정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소위원장 윤건영**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0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을 연기하는 내용인데요. 납부증명서 제출제도 시행을 3년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만큼 연기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필요한 자료의 시스템 연계가 지금 불가한 상황에서 시행 연기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당초 동 제도는 시스템을 2021년 구축하고 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계약 체결 지연에 따른 시스템 구축 순연 등을 이유로 22년 말 시행일을 24년 1월 1일로 약 2년 연기한 후에 23년 말 이를 다시 25년 1월 1일로 1년 연기하였으며, 개정안처럼 시행일을 또다시 25년 1월 1일 이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연기하면 최대 6년이 연기되는 것입니다.

개정안과 같이 시행일을 하위법령에 위임하는 사례가 아주 예외적으로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률 시행 시기를 예측하는 것이 명백하게 곤란한 상황에서만 아주 예외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1년만 연기하고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가 연기 여부는 다시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이건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금지급 정지 제도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각종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말씀드린 부담금, 과징금 등을 납부하지 않게 되면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국세나 지방세인 경우에 납세증명을 제출하고 대금을 지급받게 하고 있는데요. 각종 제재금, 부담금에 대해서도 그 제도를 도입한 것입니다. 그게 아마 2020년대 초반의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것을 갖추어야 되는데요. 관련 부과금, 분담금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119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한 65종 정도는 가끔씩 발생하는 일이다 보니까 현재 아직 수기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사이에 저희가 16개 시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추었지만 서울시가 전체적인 DB라든지 시스템이 지금 완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국민들께서 대금지급을 받지 못하시는 상황이 발생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조금 더 연장하자는 게 첫 번째 취지이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얼마만큼 연장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1년 정도로 하고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고 또 저희도 완비하는 데 있어서는 아마 27년을 넘어서야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3년 정도 연장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국민들께 덜 불편을 드릴 것 같아서 3년 연장의 의견을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여러 가지 자꾸 순연된 것에 대해서는 면목이 없고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 충분히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성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으면 1년, 길어도 2년 이상 아무 때나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고 1년이나 2년 정도로 해서 다시 국회에 와서 보고하시고 그때까지 결과를 지켜보고 그때 법 개정이 필요하면 한 번 더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님, 말씀을 좀 드리면 대통령령으로는 하지 않고 법률로 정하는 것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어서 아마 27년 7월, 8월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한 3년 정도 해 주시는 것이 보다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주민들께서 계약관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다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달희 위원** 시스템 갖추는 데 예산이 서울시 예산으로 전액 하는 건가요,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행안부 쪽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서울시 자체적으로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달희 위원** 그러면 이게 단계적으로 예산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술력이 그렇게 3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일단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행정적인 업무 프로세스 면에 있어서도 서울시 본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구청과도 연계가 되어 있다 보니

기존에 수기로 작성하던 것들이 다 DB화가 되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함께 좀 말씀드립니다.

○**이달희 위원** 그동안 법 개정할 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연기되어 왔었는데요. 그때도 이런 상황, 이런 답변이 아니었을까 궁금하네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목이 없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계약관계에서, 시스템을 만드는 계약관계에 있어서 여러 번 유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방세입 정보시스템 전반적으로 조금 자연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달희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이 정책 결정이 언제 된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21년, 20년 그때쯤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21년에 법안을 통과시켜서 22년에 하기로 했던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계속 연기가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1년 만에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판단했다는 건데 그게 벌써 몇 년째인데……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요.

두 번째, 서울시에서 지금 내년 예산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시스템을 갖추는데 총예산이 얼마나 지금 어느 정도 투여됐고 잔액이 얼마가 남은 건지를 좀, 배석자가 말씀해도 좋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말씀하세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김성기** 위원님, 세제국장입니다.

지금 현재는 일단 통합 DB, 자치구와 서울시 본청에 있는 세외수입 항목들을 다 DB로 만들어야 됩니다. DB를 구축하는 데 내년도에 약 1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노후화된 장비들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 교체 예산은 지금 산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내년 1월 1일부터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에야 DB가 아직도 안 되어 있다라는 건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강제로 시행하고 서울시를 강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님, 제가 계속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사실은 21년, 22년도부터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세정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시도는 했습니다만 그때 한 네 번 정도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안 됐고……

○**위성곤 위원** 유찰이 된 것은 금액이 안 맞았거나 그런 것 때문이겠지요. 그것을 핑계로 삼은 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면목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성희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걸 차관님을 다그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1년으로 일단 유예하고 내년에 와서 설명하셔서 또 필요하면 더 늘리는 방식으로 해야지 그냥 3년 이파 두고 봅시다 하면 조금 저희가 업무를 해태하는 느낌이 드네요.

○**위성곤 위원** 서울시……

○**소위원장 윤건영** 잠시만, 조승환 위원님 말씀……

○**조승환 위원** 먼저 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의견인데요. 1년 연장하고요, 서울시가 준비 안 하면 내년에 무조건 시행한다고 서울시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의견입니다, 그게.

○**소위원장 윤건영** 조승환 위원님.

○**조승환 위원** 제 의견은, 이게 지금 이렇게 몇 년 동안 안 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정말 이렇게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으로 다 DB화하고 전산화해야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가 원천적으로 있는 것 아닌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목이 11종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전국 DB화가 가능했습니다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한 119종 정도로……

○**조승환 위원**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세외수입이라는 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DB가 지금 통합이 안 되어 있다는 그 말씀을 좀…… 현실적인, 기술적인 상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빈도수라든지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은 하고 DB화가 도저히 불필요한 건, 예를 들어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그런 것들까지 DB화를 다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원천적으로 이것은 한번 결정된 거다 그래 가지고 무조건 정보시스템으로 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서, 이때까지 몇 년에 한 번씩 세외수입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전부 다 이걸 정보시스템으로 하겠다 그래서 생기는 문제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것은 일단 보류시키겠습니다.

○**양부남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양부남 위원님.

○**양부남 위원** 차세대 지방세입시스템, 지금 행안부에서는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에 서울시가 들어왔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아니, 안 들어와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언제 들어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사실은 그동안에 별도로 운영이 됐었고요. 일단은 DB 이런 것은 공유를 하고 시스템은 지금 별도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아니, 그것 지난번에도 제가 현안질의할 때 한 것 같은데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에 서울시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게 연동된 문제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양부남 위원** 그것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DB적으로 연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부남 위원** 내가 볼 때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은데, 서울시 고집 같은데 아니,

행안부의 이런 지시를 받지 않고 서울시가 계속 고집을 부리고 그것을 컨트롤 못 한 상태에서 마냥 이렇게 시행 연기하는 법만 내면 어떻게 해요? 먼저 서울시가 이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에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독립적인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아마 과거에 분리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그 전통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부남 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 만드는 이유는 지금 서울시까지 포섭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양부남 위원**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단순히 여기서 단편적으로 이걸 논할 문제가 아니고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에 서울시가 들어오도록 하는 문제가 먼저 선결이 되어야 돼요. 이것 연기해도 다음에 또 서울시 안 들어와서 또 연기하자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에 서울시가 들어오도록 하는 조치가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 논의해야 돼요.

○**소위원장 윤건영** 하여튼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이건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4권으로 넘어갈까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소위 자료 4권이 되겠습니다. 4권은 지방세법을 주로 개정 내용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방세는 11개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먼저 취득세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세의 개념으로 취득세는 토지, 건축물, 차량, 항공기, 선박 등을 취득한 자에게 재산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에 대한 담세력을 인정해서 부과하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로서 광역지자체의 주요 세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의 유형을 보시면 원시취득, 승계취득, 간주취득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간주취득이란 취득으로 의제되는 것으로서 선박, 차량 등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돼서 가액이 증가한 경우, 그리고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된 경우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상속차량을 미사용하고 말소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의 말소등록 기한을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혼란 요소를 제거해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이고, 같은 취지에서 자동차등록령도 상속차량의 말소등록 기한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연장하였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자동차 말소등록 의무 이행 기간과 또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일치시켜서 납세자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신성장사업화시설 등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배제입니다.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신·증설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신성장사업화시설 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촉진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이한 정책목적(국가 균형발전)으로 도입되어 50년 이상 유지 중인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는 것보다는 동일한 목적으로 도입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확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22대 국회에서 다수 제안되었고요. 또 본회의에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정부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 입장은 신중 검토 입장입니다.

신성장사업화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미래 자동차, 로봇 이런 것들의 사업이 해당됩니다. 전체적으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수도권 외 지역으로 사실은 기업의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신중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기재위 조세소위 쪽에서는 세액공제를 이 분야에 해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세 쪽에서 취득세 중과를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김성희 위원 이것 지역별로 첨예하게 갈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하기는 하는데요, 일단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제도 자체를 30년 가까이 운영해 오면서 제대로 된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제가 있는 고양시만 해도 과밀억제권역입니다. 과밀을 억제한다는 건 사람이 못 살게 하겠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과밀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해 놓고 정부가 창릉신도시 만들고 그리고 이번에 또 대곡신도시 만들고, 그러니까 일자리는 만들어 줄 수 없지만 사람은 데리고 살아라 하는 정책을 계속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사를 오는데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없으니까 두 부부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 지역 내 직주근접이 전혀 안 돼서 한 사람이 일자리를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펼쳐서는 안 된다는 점은 속기록에 꼭 남겨 놓고 싶습니다.

○한병도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신중 검토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이건 좀 토

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보류할게요.

○**배준영 위원** 아니, 저도 말씀을……

○**소위원장 윤건영** 말씀하세요.

○**배준영 위원** 김성회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게 사실 저희 영종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는 창출 안 하면서 아파트는 늘리고 그러니까 수도권에 여러 가지 교통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가 이제 시작된 지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과연 이런 단순 도식적인 수정법으로 계속 가야 되는지……

그리고 14페이지에서도 법률안 현황이나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국가정책 차원에서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래서 신중 검토로 하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도 이런 의견을 좀 남기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거니까요, 사실은 조금 더 토론이 필요한 법안이라고 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보류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 15페이지,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면적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취득세 중과 대상 고급주택의 기준에서 면적 관련 기준을 삭제하는 것인데요. 현행에 보시면 가액과 면적, 부대시설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개정안은 이 중에서 면적 관련 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취지입니다.

고급주택 기준에 가액 외에 면적이 포함되어 있어서 고가주택의 취득세율이 대형 저가주택보다 낮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응능부담 원칙의 핵심 개념인 담세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기준은 재산가액이고 면적 등은 부수적인 기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은 고급주택을 면적 기준 외에 특정 부대시설—엘리베이터라든지 에스컬레이터, 수영장—설치 여부로도 구분하여 유사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 가능하기 때문에 고급주택 기준 전반에 대한 장기적인 재검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일단 법안에 대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우선 고급주택과 고가주택의 개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가는 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이 높은 걸 고가주택으로 삼고 있고요. 고급주택은 가격에다가 각종 시설들, 특수 부대시설, 엘리베이터·수영장이 있는, 또 굉장히 면적이 넓은 것을 고급주택으로 분류를 해서 여러 가지 세금을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급주택에서 면적 기준을 제외하게 되면 사실상 고가주택하고 여러 가지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야 되느냐 하는

고민이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것들은 저희가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면적 기준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자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김성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성회 위원**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서울 청담동에 있는 78평형 빌라하고 용인에 있는 전원주택하고 비교했을 때 용인에 있는 10억짜리는 고급주택이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것은 면적이 안 되니까 고급주택이 아니라서 취득세를 싸게 내도 된다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금이라는 것은 담세력, 그러니까 해당 물건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것이……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들어 있든 아니든, 심지어는 장애인이 있거나 집안에 불편한 분이 있어서 엘리베이터를 놓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건 고급주택이 되고, 서울 시내에는 그런 걸 마케팅 포인트로 해서 고급주택 기준보다 0.5평 작게 만들어서 꽉 채웠다, 이걸 지금 셀링 포인트로 삼아서 집을 팔고 있는 것인데 한쪽…… 기본적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기준인 돈 외에 다른 가치를 집어넣어서 조세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나머지 시행령으로 행정부에서 다듬을 수 있는 것은 다듬으면 되겠지만 100억짜리는 고급주택이 아니고 10억짜리는 고급주택이다, 이것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반발 혹은 정서상의 불일치에 대해서 정부가 해명할 수 있는 대책을 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입법을 한 것이고요.

○**소위원장 윤건영** 혹시 뭐……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발의한 사항입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고칠 부분들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세금이라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특정, 강남이라고 말씀 주셨던 지역에 있는 것의 세금 같은 경우에는 각종 재산세, 종부세가 또 별도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세금으로 봤을 때는 고급주택하고 고가주택에 큰 차별성이 있고요.

만약에 면적 기준을 없애게 되면, 이게 지금 9억입니다. 가격 기준이 9억입니다만 한 53만 호 이상이 아마 갑자기 크게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점은 충분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회 위원** 차관님 지적에 대해서, 50만 호 늘어나면 그 해당 가격을 높이면 됩니다. 그건 법에 의율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으로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9억이라는 것은 이게 한 20년 전에 만들어진 기준이지요? 그 당시에 9억은 되게 비싼 집이었고 지금의 9억은 그때 가격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니까 그건 시행령에서 적절하게……

고급주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액수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것보다 훨씬 상회해서 그 당시에 9억이 가졌던 가치에 상응하는 정도로 가격을 올려서 고급주택을 정의하면 되는 문제지 이 9억에 맞춰서 50만 호가 과세 대상이다? 법을 그렇게 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시행령에서 그런 부분은 적절하게 조정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것 일단 보류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고급주택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면, 사실 이 부분은 취득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산세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는 진입 장벽 세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진입 장벽을 세우는 거고 재산세는 자산 유지세이기 때문에 양자의 차이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과밀억제권역 내 이전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입니다.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기존 본점·사무용 건축물 및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이를 신축·증축하는 경우 기존 연면적 범위에서 취득세 중과를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공장 등을 이전하는 것은 인구·경제 집중을 새롭게 유발하는 것이 아님에도 권역 밖에서 이전해 오는 경우와 동일하게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입법 취지상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장은 이미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권역 내 이전뿐 아니라 취득 5년이 경과한 후의 신설·증설까지 중과세가 제외 중에 있고요. 본점·사무소의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 중과의 입법 취지와 지자체 간 상충되는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과밀억제권역 관련해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어쨌든 수도권·비수도권 간에 굉장히 상이한 이해관계가 있고 또 비수도권 자치단체에서는 반발도 있는, 반대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국회 때도 유사한 내용으로 발의가 됐습니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견이 서로 상이해서 신중 검토했었다는 과거 사례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보류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아까 것하고 똑같아서요,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은 28페이지인데요, 담배소비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담배소비세의 개념은, 담배소비세는 담배에 대하여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시·군세가 되겠습니다.

3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합성니코틴 제품 담배소비세 부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에 합성니코틴 제품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법은 담배소비세 과세 대상으로 연초의 잎 또는 연초의 잎이 아닌 다른 부분으로 제조한 제품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합성니코틴을 추가하는 내용인데요.

검토의견입니다.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과세 필요성 판단은 결국 해당 제품의 유해성 및 규제 필요성이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한 수준인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담배

사업법상 담배에 포함시킬 건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합성니코틴 제품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시키거나 이를 포함시키지 않고 가짜 합성니코틴 제품을 규제하는 등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기재위에 현재 계류 중에 있어서 심사 경과를 지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추후 공청회를 거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 법안의 쟁점은 합성니코틴 제품이 담배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래서 우선 기재위에 있는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만약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정의가 되면 당연히 여기 지방세법에서 세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위성곤 위원** 그러면 현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판매되고 있다는 거네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현재 상황입니다.

○**위성곤 위원** 이 합성니코틴이 어떤 유해성을 갖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최근에 복지부 연구 결과가 나왔고 상당수의 유해물질, 발암성·생식독성 등이 검출되어서 연초 니코틴과 같이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게 복지부 의견입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그런 복지부의 의견이라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래서 기재위에서도 그런 취지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제가 기재위의 2023년도 국정감사를 하면서 액상담배도 사실상 담배와 같은 유해성이 있기 때문에 과세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취지로 의견을 낸 바 있고 이제 기재위에서 진행되는데, 다만 기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하려고 하면 이게 담배사업법상 담배이냐 아니냐가 먼저 선행이 돼야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것은 보류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에서 담배로 규정이 되면 뒤따라서 개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처리하면 어떨까요? 여기서는 하지 않는 걸로……

○**위성곤 위원** 저는 기재위에 그런 의견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위 명의로 실제로 담배로 인정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해서 전달하면 어떻겠습니까, 소위 차원에서? 기재위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이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합성니코틴을 만드는 업자들은 ‘전자담배랑 다른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재위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다가 그러면 공청회를 해서 다 불러 보자, 그 의견을 다 들어 보자 그래서 추후에 결정하기로 한 사항인데 저희 소위에서 이런 의견이 있다고 또 기재위에 전달하는 게 적절한지는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여하튼 이 부분은 기재위에서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규정을 먼저 한 다음에 우리가 쓰아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35페이지입니다.

폐기 담배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인데요. 폐기 담배의 기납부 담배소비세 공제·환급 절차로서 이를 제조장·보세구역으로 재반입한 후 폐기장소로 이동하는 방식 외에 바로 폐기장소로 이동하는 방식도 허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배 폐기 시 현장에서 지자체 담당자 확인을 받고 있어 이를 제조장·보세구역으로 재반입하지 않아도 폐기 여부의 확인·통제가 가능하고 재반입 과정에서 불필요한 경제적·행정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의결을 희망합니다.

업무 효율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므로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38페이지부터는 지방소비세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부과하는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도세입니다. 부가가치세액의 25.3%를 현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부분인데요.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34년까지 10년간 부가가치세액 대비 1%p씩 총 10%p를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지방소비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전국 재정자주도는 최근 10년간 큰 변동이 없고 24년에는 전년 대비 3.4% 감소하는 등 지방재정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총수입 대비 총지출 비율 기준 국가재정 여건도 일부 악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90%대로서 상기 지방재정 여건보다는 양호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률안이 기재위에 계류 중에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시면, 또한 지방소비세율이 부가가치세액의 10%p 인상되면 그만큼 내국세 수입이 감소하게 되고 그 19.24%에 해당하는 지방교부세 및 20.79%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같이 감소하게 됩니다. 실제 재정 이양 규모는 부가가치세액의 5.997%p 수준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와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와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이견 보류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시지요.

○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45페이지, 주민세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부과하는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시·군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사유를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중소기업 종업원 수 50명 초과 시 1년간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을 공제하는 제도의 적용시기가 50명을 초과하는 달에 국한됨을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동 공제 제도의 적용대상에 최근 1년 내 종업원 50명 이하로 신설된 후 50명을 초과하게 된 중소기업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적용시기의 표현 명확화입니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최근 1년 내에 종업원 수 50명을 초과하며 신설되었거나 최근 1년간 50명 이하였던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게 된 경우 초과 시부터 1년간 50명을 초과한 달에 한정하여 50명분 급여를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 자구상 이게 좀 불분명한 측면이 있어서 이를 명시하는 것이므로 표현상 오해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두 번째, 적용대상을 보완하는 부분인데요.

최근 1년 내에 종업원 50명 이하로 신설되었으나 사후에 50명을 초과하게 된 경우는 상기 1번·2번의 요건에 모두 포함되지 않아서 공제 적용이 불가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동 제도의 목적이 중소기업 고용 촉진임을 고려할 때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게 된 경우는 동일하게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정의견인데요.

다만 개정안은 이 법 시행 전 ‘최근 1년 내에 종업원이 50명 이하로 신설되었으나 사후 50명을 초과하게 된 경우’ 개정 규정을 시행일부터가 아니라 50명을 초과하게 된 시점부터 1년간 적용하되 기존 50명을 초과한 달에 대한 공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시면요 시행일 3개월 전에 50명을 초과하였다며 시행일 3개월 전부터 1년간 개정 규정을 적용하되 시행일 전의 3개월 기간은 50명을 초과하였어도 소급 공제가 금지되므로 향후 9개월간만 개정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는 입법 미비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치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적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를 수정의견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중소기업의 고용을 유지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문 규정에 대해서는 의결을 희망하고, 부칙 조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51페이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미이행에 대한 각종 가산세 부과를 면제하는 특례를 24년 말에서 2026년 말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1년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시 표와 같이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에 대한 균등분, 재산분이 통합된 것입니다.

73년 도입 이후 계속 부과·징수 방식이었던 전자가 신고·납부 세목인 사업소분에 포함되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의무 미이행이 우려돼서 미이행 시 가산세 면제 특례를 24년 말까지 4년간 유지하는 것입니다. 동 특례를 26년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5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한 내 신고·납부율이 여전히 저조하고 지방소득 세의 경우에도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부가세에서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독립세로 전환된 후에 가산세 면제 특례를 6년간 규정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는 보입니다.

다만 면제 특례만 계속 연장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한 내 신고·납부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해당 법안의 의결을 희망합니다.

과거에 어쨌든 세정 당국이 고지서를 보내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방식에서 납세하시는 분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서 여전히 신고·납부율이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해당 의안의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위성곤 위원 신고·납부율이 낮은 이유가 뭐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세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김성기 위원님, 세제국장입니다.

그동안에 이게 부과고지, 자치단체에서 직접 고지서를 줬기 때문에, 고지서가 나갔기 때문에 납부율이 높았는데 신고하는 걸로 21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한 81% 정도……

바꾸게 된 건 저희가 세목체계를, 주민세가 여러 가지로 복잡한 체계로 되어 있어서 세목체계를 좀 단순화하자는 취지에서 바뀌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낮다는 이유로 이걸 면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김성기**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자치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그래서 자치단체의 주민센터 또 누리집, SNS 여러 가지의 홍보채널을 통해서 지금 이게 신고세목으로 바뀐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한 번 연장하고 저희가 자치단체와 추가적인 방안을 강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치단체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김성기** 지금 사실 자치단체에서는 이게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부과고지로 직접 자치단체가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아직 시민들이나 국민들께서 신고·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내서 형태로, 고지서는 아니지만 안내서 형태로 지금 실질적으로는 고지서와 비슷한 형태로 발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그냥 과거의 부과고지세목으로 일부 바꾸자는 의견도 현재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저희가 일단 집행을 해 가면서 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더라도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어지고요. 부과도 할 수 있게끔 하고 신고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김성기** 위원님,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검토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희 위원** 저도 위성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요, 그냥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고 맞지 않는 부분은 이의신청을 받는 게 오히려 신고하고 또 그 돈을 갖다 내야 되고……

○**위성곤 위원** 누가 그러겠어요?

○**이달희 위원** 이런 것은 오히려 행정적으로, 현장에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의 형태대로 하는 데도 있지요? 그래서 내년 1년쯤 해 보고…… 법에 있다고 그대로 할 게 아니고 다시 이 부분은 조금 손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김성기** 예, 위원님.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은 55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지방소득세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 또는 법인의 소득에 대한 담세력을 기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시·군세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로 유형이 나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 폐지입니다. 현행은 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개정안은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정부 제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데요. 동 법률안이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안 의결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해당 법안의 의결을 희망합니다.

금투세 10%가 부과되도록 돼 있던 상황입니다.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 지방소득세에 대한 특별징수 제도를 폐지하거나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예정신고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역시 개정안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데 이게 원안 의결돼서 동 개정안은 의결이 불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것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93페이지입니다.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대상인 소규모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세율을 9%에서 19%로 인상하는 것에 연동해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의 세율을 0.9%에서 1.9%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정부 제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12월 10일 본 회의에서 동 법률안이 원안 의결되었기 때문에 개정 내용도 원안 의결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것도 정부 측 의견 없고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96페이지는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2년 유예하는 것에 연동해서 가상자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도 역시 2년 유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정부 제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데 역시 12월 10일 날 원안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안 의결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마찬가지로 정부와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재산세에 관한 내용인데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보유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시·군세 및 구세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은 주택 부분이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아서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찬반 입장 및 행안부 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찬성 입장은 리모델링 진행 공동주택은 거주가 불가해서 주택 본래의 기능을 할 수가 없고 유사한 주택정비 방식인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은 해당 주택이 철거된 이후에는 토지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반대 입장은 일단 판례가 재산세의 성격을 ‘보유하는 재산의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당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주요 외형을 유지하나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빙집, 리모델링 중인 항공기·선박 등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이 의결된다면 다음 사항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먼저 과세표준을 어떻게 규정할지 불분명한 측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리모델링의 허가를 받고 리모델링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착공 신고 후 리모델링이 완료되지 아니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로 적용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얘기처럼 일단 판례에서는 해당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했는지 여부가 아니라 재산 담세력이 있었는지를 근거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재건축과 관련된 차이점이 무엇이냐에 의견들이 있으셨는데요. 재건축은 말씀 그대로 완전 멸실되는 재건축입니다. 완전 멸실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골조가 유지되는 리모델링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리모델링 주택, 여기는 주로 아파트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단독주택이라든지 빙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과의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고민이 됩니다.

아울러 저희가 가상으로 한번 토지…… 이 안대로 한번 계산을 해 보면 실제로는 다주택자나 굉장히 고가인 주택에 상당히 많은 혜택이 가고 오히려 저가이거나 1주택이신 분들에게는 마이너스 효과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세율 차이와 여러 가지 효과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저는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합니다.

○**조승환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 법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고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실 분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보류하는 것 아닙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동차세는 특별시·광역시세 및 시·군세로서 크게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로 구분되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소유분 수시부과 시 과세기준일을 취득한 날 또는 사용을 폐지한 날에서 신규 등록한 날 또는 말소 등록한 날로 표현을 명확히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세요건과 과세기준일의 기초가 되는 개념을 통일해서 제도 내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며, 취득·사용폐지에 비해 신규등록·말소등록은 그 행위를 공식적으로 입증하는데에도 용이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자동차세 소유분 수시부과는 납세의무 성립 그리고 부과, 징수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 행위이므로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과세기준일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면 대포차량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취득한 날로부터 하면 나중에라도 소급해서 부과를 할 수 있지만 신규등록하고 말소를 해 버리면 아예 세금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가요? 과세대상자……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어떻게 보면 대포차량 자체가 위법인 것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것에 준해서 저희가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위원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아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포차량을 예상해 가지고 취득한 날로 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마이크 들고 이야기하셔도 돼요.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장 김정선 부동산세제과장 김정선입니다.

지금 현재도 자동차세 소유분 납부의무에 대한 요건 자체가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포차는 일단은 그 납부의무 자체에서 비껴 나 있는 걸로 보이고요. 다른 제재 수단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일종의 유령 차량이기 때문에……

이견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입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은 111페이지,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보전, 환경보호·개선,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목적세로 시·도세입니다.

111페이지 오른쪽 표를 보시면, 과세표준 및 세율 표에 보시면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됨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소각시설에 대한 신규 과세 부분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폐기물소각시설 각각에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을 신규 과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소각시설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유발하여 주민 피해를 발생시키는 시설이며 지자체의 기피로 인해 충분한 시설용량 확보에도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규 부과해서 지자체의 시설 유치 유인을 제고하고 이를 재원으로 주민 피해를 경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폐기물매립시설·소각시설 설치기관에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시설이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킨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고, 수도권 폐기물 대체매립지 공모가 21년부터 세 차례 모두 무응찰로 무산된 점에서 현행 지원제도가 지자체들에 충분히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다만 지역자원시설세는 특별시·광역시·도세로서 기초자치단체에는 세액의 65%만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고 사용처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결정돼서 주변지역 지원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수 있어서 피해 보전 수단으로서는 상대적으로 간접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매립시설 2km, 폐기물소각시설 300m 이내로 설정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직접 지원한다는 점에서 필요시 동 기금의 확대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우선 종합적으로는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몇 가지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의 입법 취지가 어쨌든 지자체의 시설을 유치하는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거고 주민에 대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책 수단에 대해서는 크게 지금 두 가지를 고민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법안과 같이 지역자원시설세를 거둬서 자치단체에 줘서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부담금·수수료·각종 기금을 통해서 그 주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줄 것인가의 정책 수단에 대한 고민이 우선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각종 부담금·협력금 그다음에 가산금 등 다양한 형태의 부담금을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수료도 지금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요.

그리고 이 법안처럼 했을 때 실제로 폐기물시설의 비용을 과연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설의 설치자가 해야 되는 것인지, 운영자가 해야 되는 것인지, 사용자가 해야 되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에서는 또 일단은 폐기물처분부담금과 중복이 된다는 반대 의견이 있고 또 자치단체 간에도 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울·경기·대전 쪽에서는 반대 의견이고 이 시설이 있는 지역에서는 찬성의 입장에 있고 그리고 실제로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분이 실제 주민이 될지, 중간에 계신 분이, 업자가 될지 여러 가지 측면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모경종 의원이 참고자료를 아마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는데 그것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기금 활용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모경종 의원님이나 김상욱 의원님의 그 문제의식에는 동의하십니까, 정부 측은?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어쨌든…… 예,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결국은 이게 환경 파괴 시설, 환경 피해 시설이 들어오는데…… 필요한데,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만들어야 되는데 지자체가 나서서 만들지 않으니까 만들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제도를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떤 형태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이것은 어쨌든—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환경부 쪽에서 고민이 더 돼야 됩니다만 지금 상태에 있는 유인책에는 특별지원금이 있고 각종 주민편의시설 등등이 있습니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유인책이 더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관련해서 지방정부를 행안부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다음 법안 심사 논의 전까지?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여러 가지 부담금·협력금 등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는 이런 쓰레기가 발생되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도 부담금이 좀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류해 주시고요. 다음에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27페이지입니다.

해저광물자원에 대한 신규 과세입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현행법상 지하자원에 대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특정자원분 과세 중입니다. 해저광물자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 과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해저광물자원의 채취는 환경오염, 부존자원 감소 등 부정적 외부효과를 수반할 가능성 이 있고 현행법이 지하자원에 대해 이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분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존 장소만 다른 해저광물자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세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일관성상 타당하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는 개정안의 입법 목적에 해당하는 해저광물자원의 채취가 본격화되지 않아서 부정적 외부효과의 규모 그리고 그에 대한 세율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서 정부의 사전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이 건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건이 아마 대왕고래 프로젝트, 석유 시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아직, 탐사가 이제 겨우 시작된 단계고요. 실제 경제성이 있는지, 채굴 가능한지 여부는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고요.

아울러 법리적으로는 과연 해저광물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과세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금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을 함께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위성곤 위원** 보류하시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이것 보류로 하겠습니다. 보류 안건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34페이지의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신규 과세입니다.

방사성폐기물은 누출사고의 잠재적 위험을 인근 지역 주민에게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피해보전을 위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15년부터 가동 중인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 저장되고 있으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에 따라서 주변지역에 각종 지원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저장시설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여 개별 원전 내에 저장 중이라는 점에서 저장시설 유치를 위한 충분한 유인이 제공되지 못하는 측면이 존재합니다. 다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부지 선정을 촉진하고자 그 주변지역에 각종 지원을 제공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5개 제정안이 산자중기위에서 본격적으로 심사되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일단 우선은 신중 검토입니다.

전문위원 말씀처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법률안이 현재 논의 중에 있고 거기에 따라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행안위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지방세를 부과할 것인지 지방세외로 부과할 것인지 고민이 있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외인 각종 부담금들이 굉장히 많이 원자력발전에는 부과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이견 없으신가요?

○위성곤 위원 정부 측 의견에 이견 없습니다.

○조승환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보류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보류하는가요?

○소위원장 윤건영 아니요, 이견이 있으면 보류할 텐데 정부 측 의견에 동의하신다는 거잖아요, 다들?

○위성곤 위원 예.

○소위원장 윤건영 넘어갑니다.

○이달희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44페이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발전 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안입니다.

찬반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찬성 입장은 원자력발전·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각각 06년 그리고 14년에 신설되고 15년에 세율이 함께 2배 인상된 후에 화력발전은 24년 세율이 추가로 2배 인상되었으나 원자력발전은 미인상되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고요.

반대 입장은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23년 3분기부터 전기요금이 동결 중인 상황에서 세율 인상은 발전사업자의 재무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정안 의결 시 적용례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자력 관련해서는 각종 부담금들이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그걸 근거로 지역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울러 아마 26년도부터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원전에 가까운 지역은 아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게 전기료의 전체적인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이달희 위원 이건 23년에 통과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각 지역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고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의견 없으면 정부 측 의견을 수용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성곤 위원 아니, 보류를 좀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보류? 예, 보류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48페이지입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연료별·발전방식별 차등세율을 도입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발전량 kWh당 0.6원으로 동일한데요 이를 LNG 연료 일반 화력발전은 0.3원, 그다음에 열병합 화력발전은 0.2원, 기타 연료는 0.6원으로 차등화를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LNG는 석탄, 석유 등 다른 발전용 연료에 비해서 온실가스 배출이 적고 열병합발전은 폐열을 재활용하여 지역난방 등에 제공함으로써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시킨다는 점에서 각각 부정적 외부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연료 및 발전방식이고, 두 번째로 같은 이유에서 LNG에 대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 수입부과금이 19년에 2만 4242원에서 3800원으로 84.3% 인하되었고 그중에서도 열병합발전용 LNG는 부과금 면제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참고로 보시면 예산처에 따르면 연평균 482억 원의 감소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의견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서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는 어쨌든 세수 감소가 한 482억 원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지자체에 아마 고민들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전문기관들에서도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는 점 함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화력발전 관련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0.3원에서 0.6원으로 올해부터 인상이 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보류하시지요, 뭐.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성희 위원 이걸 또 한마디는 하고 지나가야 되겠는데, 지금 지방세 482억 감소하는 걸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온갖 세금에서, 상속세니 뭐니 해서 사십 몇조씩 날리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장면은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소위원장 윤건영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51페이지입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규정 방식을 일정세율 방식에서 탄력세율 방식으로 하는 것인데요.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찬반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찬성 입장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자리 및 인구 구성 등에 따라 발생되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하고 동일한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시설분인 컨테이너 지역자원시설

세도 표준세율·탄력세율 방식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반대 입장은 14년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시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탄력세율 적용 배제를 조건으로 산자부가 동의한 바가 있다는 점이고요. 화력발전 지원자원시설세 세율이 이미 24년 2배 인상된 상황에서 탄력세율을 도입하면 다시 세율이 최대 50% 인상돼서 납세의무자의 부담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편 개정안은 원자력발전·화력발전 중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에만 탄력세율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두 세목은 모두 기존 에너지를 활용하는 발전 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도입 여부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종합적으로는 일단 신중 검토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력발전 또는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도입하면서 화력발전·원자력발전세에 관한 사항은 그 지역의 문제라기보다는 전국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당시에 탄력세율을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때 합의가 되었고 논의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탄력세율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수석전문위원께서 예시로 아마 들어 주신 컨테이너 지역자원시설세인 경우에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을 의견 부탁합니다.

○**배준영 위원** 정부 의견대로……

○**위성곤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역에 교부할 때 교부조정금으로 60%를 그 지역에 준다고 했는데 이게 각 기에 지금처럼 화력발전 지원시설세 이렇게 세목별로 나눠 주는 거예요, 아니면 총액을 뮤어서 나눠 주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자원시설세는 광역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은 기초에 있다 보니까, 기초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100이라 치면 65를 해당 자치단체에 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신가요?

○**위성곤 위원** 시도에서 걷어서 35%는 시도가 쓰고 65%는 시군에 나눠 준다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전체적인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해당 지역에만 나눠 주는 겁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그 시설이 있는 지역에 주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역에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 비율은 제가 65가 정확한지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조정교부금 제도로 주게 됩니다, 기초 시설에.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에 혹시 의견이 있으신가요,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55페이지입니다.

조치명령 미이행 빈집에 대해서 지역자원시설세 중 소방분을 중과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는 빈집은 각종 범죄·안전·위생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에도 22년 기준 전국 13만 2052호에 이르고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은 소방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해서 소방사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세입니다. 그런데 빈집 정비를 위해 이를 중과하는 것은 과세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고요. 상기 조치 명령 미이행 시 근거 법률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조치를 대신하고 비용을 징수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실효성 확보 수단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이게 속칭, 흔히 말씀드리는 빈집세라고 하는 개념에 해당되는 것입니다만 빈집에 계신 분들이 보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실제로. 그분들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걷어야 되는지 고민이 있고 또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명령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현재 부과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이중 부담의 소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지역자원시설세 종류의 하나인 소방분은 어떻게 보면 화재 위험이 굉장히 큰 시설에 부과하는 것들입니다. 주로 고층건물이라든지 다중시설 등에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비해서 빈집의 경우 상대적으로 화재의 위험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소방분으로 부과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 161페이지입니다.

지방교육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 취득세·재산세·담배소비세 등 7개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가세입니다. 그리고 특별시세·광역시세 및 도세입니다.

옆의 표를 보시면 세율이 취득세분의 20% 그리고 주민세분의 10%까지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분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안이 되겠는데요. 현행은 24년 말까지, 올해 말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정부는 26년 2년 연장 그리고 백승아 의원님은 27년 말까지 3년 연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찬반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2년 연장 후에 26년 말 일몰시키기로 합의된 사항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찬성 입장은 국세수입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23~24년 예산 대비 총 14.7조 원 감소가 전망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비 분담 규정이 24년 말 일몰된다라는 점 등을 제시하고 있고요.

일몰 연장 반대 입장은 학령인구가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해서 이게 96년 대비 24년에 걸쳐 39.1% 감소하였고 일몰기한이 일곱 차례 연장되어 왔기 때문에 일몰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희는 2년 후 일몰하는 안을 건의를 드립니다.

일단 좀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논의하셨던 담배소비세가 있었고요. 거기에 붙여진 세금이 지방교육세분이 있습니다. 그게 연간 한 1.6조 정도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걷어서 교육청에 주는 돈입니다. 그걸 매년 일몰 단위로 해 왔고요. 이번에 교육부랑 충분히 협의를 해서 2년 후에는 전체적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부 내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일몰 2년 연장으로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위성곤 위원** 2년 연장하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2년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2년이냐, 3년이냐 이건데 정부는 2년 연장하는 입장인……

동의하시면 보류 없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66페이지입니다.

부동산규제지역 개편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규정 등에 규정된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및 소득세법상 지정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해당 법안이 각각 국토위와 기재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주택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의 의결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의견에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4권까지 끝났고요. 아직 반도 못 왔습니다.

○**위성곤 위원** 밥 먹읍시다.

○**소위원장 윤건영** 밥 먹고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가 계속 중이나 점심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소위원회 심사자료 제5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소위 자료는 총 3권입니다. 소위 자료 5-1권의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소위 자료 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요약표를 보시면 단순 일몰 연장이 87건, 연장 축소가 15건, 신설·확대가 26건, 종료가 5건이 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85건 특례의 일몰기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 내용은 122건이며 총 감면 규모는 3조 9099억 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몰기한의 설정에 있어서는 통상 3년으로 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는 최소납부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최소납부세제는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100% 면제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면제세액의 15%는 부담하게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면제액이 취득세 200만 원, 재산세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최소납부세제와 관련해서는 매매용 중고자동차 감면과 생초 주택 구입 그다음에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이 관련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특례의 원칙은 제2조의2에 여덟 가지의 원칙을 두면서 각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종합적 고려의 의미를 사례인 연안여객선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같은 경우에는 연안여객선 사업자가 새로운 선박을 도입함으로써 도서·해안 지역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마련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 있겠고요. 지역균형발전의 기여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조세의 형평성이 특례법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 중의 하나인데요. 비교의 대상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안여객선의 비교의 대상은 가장 가까이 있는 연안화물선이 될 수 있겠고요, 대중교통 중에서 버스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안여객선의 감면을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연안화물선에 감면이 있고 또 역시 버스가 감면이 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실 수 있겠고요. 조세부담능력은 열악한지 또는 능력이 있는지가 되겠고요.

6번에서 재정여건 부분은 감면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등이 되겠고요.

7번, 8번은 보시는 바와 같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조세의 형평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비수도권 지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감면이라는 이 특례에 관련해서는 일단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감면지역은 수도권이냐 비수도권이냐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기준으로 인구감소지역과 비인구감소지역을 예시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사업수행자 부분인데요. 종교단체인 재단법인과 종교단체가 아닌 재단법인 간에 의료기관 설립 주체별로 지방세 감면율에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종교단체인 재단법인은 취득세 30%, 재산세 50% 감면이 되는 데 반해서 종교단체가 아닌 재단법인은 그거의 절반 수준인 15%의 취득세, 25%의 재산세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의 자금조달 방식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느냐 아니면 담보신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취득세 감면이 달라집니다. 역시 이 다름이라는 것이 감면 여부 및 감면율의 차이를 가져올 정도의 다름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이거 관련해서 한 페이지짜리 다시 나눠 드린 게 있는데요. 지금 지방세 감면은, 특례법은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자료도 역시 분야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걸 목적별로 나누게 되면 세 가지 유형으로 크게 나뉜다고 보입니다.

하나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례입니다. 이건 배려고 이 배려를 통해서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보입니다. 장애인이라든지 한센인, 서민주택에 대한 특례 등이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the more, the better의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로는 범공익성에 대한 특례라고 보입니다. 이것은 공익성의 부분을 보완시켜 줌으로써 경쟁력을 강화시켜 주는,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보입니다.

연안여객선 또 의료기관, 가장 사적 자치가 활발한 지역인 기업의 합병·분할에 대해서도 일부 특례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공익성과 사익성의 비율에 맞는 감면율과 감면액을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일반 국민들에게 과연 혜택이 가는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책효과를 위한 특례로 유인하는 것인데요,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가구 1주택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그에 대한 특례, 그 다음에 내진 관련 특례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8페이지, 농어업을 위한 지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귀농인 취득 농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연장 등에 관한 겁니다. 9건의 개정안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와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추징규정을 완화·보완하는 내용으로 23년도 연간 감면규모는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감면대상자, 감면대상, 감면내용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런데 추징사유가 현행은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추징여부가 결정됐는데요. 정부안에 따르면 농업 외 산업에 종사하되 발생하는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추징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은 대략 3700만 원이 예상이 됩니다.

일몰기한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일몰기한 연장은 농촌 경쟁력 강화 및 지방소멸 문제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몰기한은 통상 3년입니다.

추징규정 완화의 경우에도 귀농인의 초기 정착을 돋고 귀농 장려 정책목표 달성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특별자치도 범위 규정을 정비하는 건데, 이것은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시군을 두는 특별자치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표시하는,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대비표를 잠깐 보시면 12페이지에 일몰기한 연장된 부분이 돼 있고요. 13페이지에는 특별자치도에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로 하고, 14페이지에는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농업 외의 산업에 종사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여러 안이 있습니다만 정부안 의결을 희망합니다.

먼저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귀농인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3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추징규정 완화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귀농인의 농업 외 소득을 일정 부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자치도 관련 규정은 관련 내용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이달희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의견에 이견이 계신 위원님 계신가요?

○**위성곤 위원**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 시간과 관련되어서 한 29년까지 해도 되지 않겠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희가 어쨌든 통상 3년 정도 항상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3년?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이 없으면 정부안대로 처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용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농어업인에 대한 저금리 용자를 지속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일몰기한은 25년으로 25년까지 지방세 감면 특례를 운영한 뒤에 지원 효과, 지방재정 영향,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수석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몰기한이 내년 말까지입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지금이 아니라 25년, 내년 연말에 가서 판단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김성희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에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갑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7페이지입니다.

7건의 개정안은 농어업인이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하여 부과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종업원분 면제를 통해서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필요성을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감면은 통상 3년으로 정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일몰기한 통상 3년임을 고려하여 3년 연장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정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달희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에 이견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9페이지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공공시설물을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공공시설물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는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재산세 감면율을 하향 조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의 표를 보겠습니다. 20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감면대상자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되고 감면대상은 공공시설물 등으로 현행과 같습니다. 감면내용에서 변화가 생기는데요. 재산세 100%를 감면하는 게 현행입니다. 특히 도시지역분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정부안의 경우에는 반대급부가 없으면 재산세 100%를 감면하고 반대급부가 있게 되면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산세의 본세를 제외한 도시지역분을 제외하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몰기한 연장은 통상적으로 3년 해 왔다는 점이고요.

도시지역분 감면 배제 관련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도로 유지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 등에 부여되는 것으로 동 감면을 축소함으로써 도시계획 재원 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반대급부 여부에 따른 감면율 차등을 두는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73조의2제1항과 동일한 취지로 법체계 정합성 제고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가 받은 구체적인 반대급부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세 감면율을 일률적으로 50%로 정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일몰기한 연장은 3년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내용 중에 있는 반대급부가 있는 경우에 감면율을 하향 조정하는 안을 정부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0%로 맞춘 것은 관련 법률의 정합성,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한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달희 위원** 정부 의견 동의합니다.

○**위성곤 위원** 반대급부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법률의 어떤 것들이 적용되게 되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아마 개별 개별 사업하고 계약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 일정한 도로 부분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에 상응해서 옆에 있는 토지를 무상 양여를 받아서 같이 개발한다든지 그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폐도로, 하천부지 이런 쪽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으로 인한 수익과 이게 상계된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일단 농어촌공사나 향후에 LH, 수자원공사 같은 케이스들이 계속, 이제 곧 보고를 드릴 텐데요. 이분들이 하는 것들이 말 그대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개발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면서 그 안에 폐도로나 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공공 용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 여타의 것들은 계속 개발을 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반대급부가 농어촌공사 쪽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농어촌공사나 향후에 보고드릴 LH 등에 있어서는 굉장히 당기순이익이 현재 나고 있다

는 점도 저희가 고려한 것입니다.

○**위성곤 위원** 농어촌공사나 LH의 입장은 어때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희가 협의했을 때는 크게 반대의견은 없었던 사항입니다만 오늘 전문위원 자료 중에는 논의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표시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성곤 위원** 구체적이지 않아서요 이걸……

○**조승환 위원** 도시지역분 감면 배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데, 이게 반대급부의 성질이나 성격 이런 거에 따라서 봐야 되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LH도 있다 그러니까 같이 한번…… 아, LH 거는 여기에 안 들어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LH도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오늘 이 안에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같이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부분 끓어서 같이 보고요. 일단은 보류……

○**조승환 위원** 같이 보시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일단 보류해서요 같이 보시지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25페이지입니다.

8건의 개정안은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개량 대상자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몰기한은 통상적으로 3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일몰기한 연장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갑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부터는 사회복지자를 위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6건의 개정안은 장애인의 보철·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2000cc에서 3000cc로 확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의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면대상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은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인데요. 이병진 의원님 안, 김예지 의원님 안이 3000cc 이하로 상향하는 것이 되겠고요.

일몰기한 연장 관련해서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3년이었습니다.

배기량 기준 상향 관련해서는 장애인용 자동차로 상대적으로 차체가 큰 3000cc 이하의 차량을 선택할 수 있게 돼서 보철 장구의 운반 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논의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배기량 기준이 1995년에 1500cc에서 2000cc로 정해진 바 있는데 이후 변경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방 세수의 감소도 커질 수 있다는 점, 국가유공자 등 다른 특례 감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고려할 때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차량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든지 향후 3년간은 예를 들어서 2500cc로 확대한 후에 정책효과를 살펴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감면 상한을 2000cc에 해당하는 감면액으로 상한을 두는 방안 등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의견을 좀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두 번째, 배기량을 현재 승용차인 경우 2000cc에서 3000cc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자동차에 관련해서 편의를 제공한 당초 취지는 보행보조기구, 의료기기 탑재가 가능한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인승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면 면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큰 자동차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고려해 주실 게 6인승, 5인승 이하 승용차에 대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설계할 때 2000cc를 기준으로 했고요. 사실 2000cc하고 3000cc에서 내부 탑재 공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장애인자동차인 경우에는 감면 상한선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굉장히 고가인 2000cc 이하 자동차인 경우에도 거기에 다 상응하게 지금 세금이 면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찾아 보니까 2억 원짜리 2000cc 이하인 경우에도 감면된 케이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자동차 취득세 관련해서는 어쨌든 상한이 없는 관계로 시시가 만약에 3000cc까지 확대가 되면 굉장히 큰 고가의 자동차, 외제 자동차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장애인자동차의 규정하고 다음에 보시게 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 지원 규정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아마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아마 세수 감소분이 상당 부분 매우 커지게 된다는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위성곤 위원** 특별하게 3000cc가 기준이 된 이유를 혹시 알고 있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위성곤 위원** 3000cc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안을 내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닙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제가 두 분들에게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그 단체에 계신 분들은 2000cc보다는 조금 더 나은 차에 대한 혜택을 희망하셨던 것으로 추론이 됩니다.

○박정현 위원 아마 보철 장구 운반이 조금 용이할 거라고 판단해 주신 것 같아요.

○조승환 위원 승합차 같은 거는 다 지금도 되고 있잖아요, 승합차 같은 경우에.

○김성희 위원 쉽게 말하면 소나타나 제네시스나 이런 차이인 거잖아요.

○조승환 위원 그렇지요.

○위성곤 위원 차량가액을 기준에 추가해서 3000cc를 받으면 어때요? 아까 앞서 2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차량가액을 5000만 원 이하, 6000만 원 이하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글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토론이,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인데요. 현재까지는 어쨌든 차량가액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승용차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굉장히 고가도 하시고 또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가격도 선택을 하셨는데 만약에 새로운, 5000만 원이든 예로 말씀 주신 금액의 캡을 씌웠을 때 그 분들의 의견을 아마 저희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야 되는 고민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위성곤 위원 보류하고 의견을 듣는 걸로 하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39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한센인 및 한센인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한센인정착농원'의 명칭을 '한센인정착마을'로 개칭하며, 한센인정착마을 목록의 위임규정을 대통령령에서 고시로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몰기한 연장 관련해서는 질병·고령 등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센인에 대해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통상적으로 3년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위임규정 변경과 관련해서는 위임규정을 고시로 변경함으로써 한센인마을이 변경되는 경우 신속하게 변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센인정착마을 목록은 지방세 감면 대상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참고로 필요하다면 대통령령에서 한센인정착마을을 규정할 때 행정안전부의 고시 또는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따르도록 하는 재위임 방식이 보다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일몰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임규정을 대통령령에서 고시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수용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건의 개정안은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위탁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감면율을 상향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의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19조는 어린이집·유치원과 직장어린이집 감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위에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감면의 경우에는 일몰기한을 제외하고서는 다 현행과 같은 동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 감면의 경우에는 기존의 감면대상자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였습니다. 정부안에서는 설치 의무를 배제하고 ‘설치하는 사업주’가 되고요. 감면 대상도 설치 의무가 배제되고요. 감면내용에 있어서도 취득세 50%에서 취득세 100% 이렇게, 재산세의 경우는 동일하고요. 일몰이 2027년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일몰기한 연장은 필요해 보이고요.

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 감면대상·감면율 확대는 감면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감면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사업체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안 의결을 희망합니다.

일몰기한은 연장을 하고 직장어린이집 감면대상과 감면율을 전체 직장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승환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안에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4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사유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일반적 추징규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개정안은 신축, 증축 또는 대수선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검토의견입니다.

신축, 증축, 대수선하는 경우에 대한 유예기간을 연장함으로써 노인복지시설이 노인의 주거·치료·생활하기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다만 신축, 증축, 대수선하지 않는 경우에도 노인복지시설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제2항의 추진규정에서는 신축, 증축, 대수선 외의 경우에도 3년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안 의견을 희망합니다.

현재 원칙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안에는 사용을 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신축, 증축 등 노인시설에 필요한 부분은 3년까지 연장을 한 상황입니다.

전문위원님 의견 중에 사회복지법인은 3년 예외 사유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회복지법인 일몰이 내년에 도래를 합니다. 그때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저희가 개정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이달희 위원 정부 의견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의견에 의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51페이지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사회복지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통해서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환자들에게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3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일몰 연장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혹시 의견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54페이지입니다.

11건의 개정안은 다자녀 양육자의 자동차 취득세를 경감하는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다자녀 양육자의 범위를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몰기한은 보시는 바와 같이 29년, 27년인데요 통상 3년이 되겠고요. 감면대상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현행과 같은 경우도 있고 2자녀 이상 양육자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면대상은 양육 목적 자동차로 현행과 같고요. 감면내용에 있어서 지금 현행은 취득세 감면율 100%에 감면한도가 140만 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동진·김승수 의원님 안은 승차정원 6인 이하 승용자동차 감면한도를 200만 원 그리고 그 외의 자동차는 현행과 같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정부안은 2자녀의 경우에는 감면율은 50%, 감면한도는 70만 원이고요. 3자녀 이상의 경우는 현행과 같은,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음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일몰기한 연장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감면대상자 확대 및 감면한도 조정 관련해서는 2자녀 양육자를 감면대상자에 포함하고 감면한도를 조정해서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 대한 효과성,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추세, 다자녀 기준의 적정성,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안 의견을 희망합니다.

일몰기한은 연장을 하고 현재 3자녀부터 혜택이 있는 것을 2자녀 양육자까지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현재 3자녀 이상 가구가 한 45만 가구이고 2자녀 이상이 한 224만 가구로 2자녀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세율을 설계함에 있어서, 3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세 100%에 최대 140만 원까지 현재 돼 있는데요 2자녀인 경우에는 그 반인 감면율 50%에 최대 한도 70만 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한 1286 억 원 정도 감면 혜택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3자녀하고 2자녀 이런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서 정부안을 마련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위성곤 위원** 부모의 나이 기준이 있나요, 출생연도 기준이?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나이는 없고, 아이들 나이 기준이 18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이들 나이는 몇 세까지.....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18세 미만의 자녀입니다.

○**위성곤 위원** 18세 미만의 자녀?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조승환 위원** 140만 원이면 한 2000만 원 정도 차량가격을 산정한 건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이달희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위성곤 위원** 정부안이 감소액이 제일 많네요.

○**소위원장 윤건영** 의견 없으십니까, 정부안에?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 의견 없으면..... 아니,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보류하고 좀 고민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있으면 보류하시지요.

이번 건은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68페이지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사회적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의 역할을 안정적·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3년으로 정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3년 연장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혹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정부안으로.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20년 1월 15일부터 23년 3월 13일까지 납부한 등록면허세·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에 대해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지방세 환급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의 효과성과 소급입법에 따른 과세행정의 안정성 저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입장은 일단 신중 검토의 입장입니다. 어쨌든 정상적으로 과세된 것을 다시 환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과세행정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세히 말씀드리면, 장애인활동기관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사이 이루어졌는데 일부 자치단체, 저희가 보기에는 서울에 있는 몇 개 구 정도 그리고 대구, 인천의 몇 개에서 감면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례를 바탕으로 환급이 필요하지 않느냐를 지금 의견을 주신 상황인데요. 전국적으로는 어쨌든 98% 이상은 정상적으로 과세가 됐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한병도 위원** 이것 지금 장애인활동기관 관계자들은 해당 감면을 받지 못하면서 생활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도 들립니다. 그래서 이런 구제방안을 행안부에서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일단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서는 23년도부터—제작년입니다—감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3년 이전에는 감면이 안 됐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환급을 말씀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서울시하고의 논의는 저희가 다른 방법이 있는지를 지금 찾아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병도 위원** 이건 이대로 하더라도 일단 구제방안 모색 관련해 가지고 한 번만 더 토론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73페이지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노동조합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동조합이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3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3년 연장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 있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75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의료사업과 재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3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감면 연장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지방세 감면대상인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추가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단체 소유의 부동산은 회원의 복리증진과 재활치료 등 보훈 목적의 복지회관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순직군경유족회가 설립되는 경우 지방세 감면 특례를 부여할 필요성이 인정되겠습니다.

다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심사경과를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무위에 논의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진행 상황을 보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정부안에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부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79페이지입니다.

6건의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차량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 승용자동차의 범위를 현행 배기량 2000cc 이하에서 배기량 3000cc 이하로 확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시면 일몰기한 연장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 3년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배기량 기준 상향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역시 아까 장애인과 유사하게 배기량 기준이 92년에 정해진 이후에 변경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지방 세수 관련된 점, 장애인 등 다른 특례 감면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세 가지 정도의 대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이거 보류하겠습니다, 어차피 다 같이 둑여 있는 거니까.

○ 위성곤 위원 보류 전에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자료를 찾아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자동차가 1500cc 미만으로 돼 있더라고요. 평균 가액은 한 3000만 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보통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보류하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86페이지, 2건의 개정안은 보훈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보훈병원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 3년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이요.

○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연장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8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의 안정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 3년입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안 의결을 희망합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감면율을 상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감면대상에는 현행 40㎡ 이하의 공동주택에 다가구주택하고 오피스텔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고요. 감면율 상향의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율을 각각 25% 상향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서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공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 세수 감소의 가능성 그리고 정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전체적으로는 개정안에 대해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현재 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하고 민간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말 그대로 공적인 기관에서 임대주택을 하는 공적인 영역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민간임대를 도입을 하면서 민간임대 부분에 상당히 강한 규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임대인 경우 장기임대인 경우 10년 동안 임대를 해야 되고 임대료를 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각종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규제를 하면서 그 반대 급부로 상당한 세제 혜택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은 민간임대와 똑같이 그 전제에 있는 공공임대도 세제 혜택을 그만큼 주자는 의견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 안대로 하게 되면 대상이 상당히 많이 넓혀집니다. 한 56만 호 정도가 대상이 되면서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이 크게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한 6900억 원의 감면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당히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임대사업과 관련해서는 공공임대하는 기관들, LH나 SH 등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감면 요소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부 입장에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정부 입장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위성곤 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공부 좀 하고……

○**소위원장 윤건영** 그럼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95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조문 정비, 감면대상 확대, 규정 의미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윤재옥 의원님 안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 되겠고요. 정부안의 경우에는 일몰기한 3년 연장 및 조문 정비, 감면대상 확대, 규정 의미 명확화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문 정비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31조에 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은 제31조의3으로 이관해서 안 31조에는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공공임대주택 감면대상에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는 것 이 되겠습니다.

임대형기숙사는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실이 20실 이상이고 해당 기숙사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 이상인 것을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현행 공공과 민간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정부안은 공공으로 조정리가 되고요. 감면대상에서는 임대형기숙사가 추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에 있어서는 감면율과 대상은 동일하겠습니다. 일몰기한이 2027년으로 3년 연장되고요. 의미 명확화와 관련해서는 토지에 대한 감면 및 추징 규정을 보완하고,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일몰기한 연장은 필요해 보이고요. 임대형기숙사 포함 관련해서는 다양한 주거 수요가 있다는 점, 1인 가구의 증가, 청년층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공유주택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에 대한 감면 및 추징 규정 보완도 지방세 감면대상임을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항으로 보이고요.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건축주로부터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는 임대형기숙사' 그리고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로 개정해서 조문의 의미를 명확히 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우선 일몰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일몰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감면대상에 공공임대사업자의 임대형기숙사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토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부분, 최초로 분양받은 것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부분은 정부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위성곤 위원** 정부는 공공만 하고 민간은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감면해 주고 있는 민간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돼요, 몇 가구나? 공공과 민간의 비율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공공주택 오피스텔에 정부안은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공주택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임대형기숙사만 하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 서은주** 지방세특례제도과장입니다.

지금 말씀 주신 감면대상은 현행 공공주택과 오피스텔에 그건 기준대로 인정을 하고 추가적으로 임대형기숙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임대사업자 수는 2023년 기준으로 26만 명 정도 됩니다.

○**위성곤 위원** 민간?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 서은주** 예, 민간이요. 저희가 민간도 지금 다 감면을 하고 있고 이 다음 순서에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위성곤 위원** 공공은 몇 채나 지금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상 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지방세제국장 김성기** 위원님, 공공임대주택은 약 180만 호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180만 호 정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소위원장 윤건영**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07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되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조문 정비 및 규정 의미를 명확화하는 내용인데요.

윤재옥 의원님 안이 일몰기한 3년 연장입니다. 정부안은 3년 연장 플러스 조문 정비, 규정 의미 명확화 등이 있는데요. 조문 정비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행법 제31조에 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은 31조의3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 감면대상 역시 확대합니다. 역시 공공임대주택 감면대상에 임대형기숙사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의미 명확화로서 토지에 대한 감면 및 추징 규정을 보완하고 ‘건축주로부터 최초에 분양받은 경우’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면대상에 임대형기숙사를 포함하는 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필요해 보이고요. 역시 토지에 대한 감면 및 추징 규정을 보완하고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의 의미를 명확화하는 것 역시 필요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안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부탁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아까 21번과 22번 관련해서 21번에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문대비표인데요.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지금 단서 조항에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이 3억 원, 수도권은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는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임대형기숙사가 포함이 되는데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임대형기숙사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격을 한정하게 되면 한 채, 한 채로 계약되는 게 아니라서 이 가격 한정되는 부분에서 임대형기숙사는 제외되는 게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해서 의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혹시 의견……

차관님 말씀……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타당한 의견입니다.

○박정현 위원 타당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해되셨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임대형기숙사가 이 금액이 들어가 있으면 빠지게 되니까 그걸 좀 수정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견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20페이지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서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자에 지방주택공사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몰기한 연장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감면대상자 확대의 경우도 지방주택공사를 추가함으로써 과세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입 주택 등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감면하는 부분인데요, 공공리모델링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임을 고려해서 동 내용 항을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향후 LH공사가 매입한 주택 등의 구조 등을 변경하여 공급하는 사업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문대비표 한번 보시겠습니다.

123페이지의 7항이 되겠는데요—현행입니다—‘제6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대상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하여 세대수·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철거 후 신축하여 공급하는 주택 및 건축물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정부안에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잠정적으로 중단 상태인 것은 맞지만 향후 실시 가능성을 고려할 때 현행 규정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희는 정부안 의결을 희망합니다.

감면대상자를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자는 의견이고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주신 공공리모델링 사업, LH가 공공리모델링을 직접 해서 하는 사업에 대한 조문을 저희는 삭제하자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이유가 21년도부터 해당 사업이 중단은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LH가 이 사업을, 그러니까 노후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는 데 한 3년 정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사업장이 소규모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업무가 혼란하다든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대안으로 사실 LH 쪽에서는 민간건설업자가 신축한 건물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으로 전체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신축한 건물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공공임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말씀 주십시오.

정부 측 안하고 수석전문위원 안의 차이는 LH 리모델링 사업 부분을 남겨둘 거냐 삭제할 거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이달희 위원** 사업을 다시 하게 되면 법을 또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수석전문위원 의견대로 두는 게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공공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차관님, 두더라도 크게 이상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국토부와 조금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3건의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25% 감면을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진석 의원님 안과 정부안은 감면대상을 26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소유권을 공유하게 되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지분공유형 분양주택을 추진 중인 곳은 경기주택공사 등 소수라는 점을 감안하면 26년 말까지 소유권을 공유하는 사례가 많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우선은 정부안 의결을 희망합니다.

일몰기한을 26년 12월까지, 이번에 이런 제도를 처음 신설하다 보니 26년까지 제도가 설계되었습니다. 26년 일몰 도래 시의 여러 가지 효과들을 다시 한번 분석해서 연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이달희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에서는 26년까지 하고 혹여라도 수요가 있으면 그때 또 손을 보자라는 취지이신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2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대주택을 매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가 임대주택 건축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신축 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감면대상

에 임대주택 매도 약정 60일 전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하며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을 통해서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될 주택의 건축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을 취득하는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과 정부안을 비교해 보시면 취득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또 감면대상에 임대주택 매도 약정 60일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안 의견을 희망합니다.

매입약정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LH 등이 신축 주택을 매입해서 무주택 또는 저소득·신혼·청년에게 저렴하게 한 20년 동안 월세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조금 늘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이 사업이 매입 후 임대사업……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매입해서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에 건물을 등기할 때 건설사에게 감면해 주겠다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건설사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좀 주겠다는 것입니다.

○**조승환 위원** 이것은 매입약정, 사겠다는 약정을 할 때 그 약정을 이행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거나 했을 때 그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거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맞습니다, 위원님. 정확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그런데 10%하고 15%의 차이가 됩니까? 수석전문위원의 의견도 그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숫자를 왜 10에서 15로 했는지 기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희가 일단은 양도소득세에서 한 10% 감면을 해 주고 있어서 그것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 15%를 한 것입니다. 현행도 취득세는 10%였기 때문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5%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달희 위원** 정부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의견 있으시면……

○**이달희 위원**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3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100호 이상의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을 신축하거나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에 대해 취득세 감면 및 임대할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임대형기숙사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입법 취지입니다.

임대주택서비스 선진화 및 임차인 주거 안정 등을 위해 20년 장기 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세한 임대시장 구조로는 임차인의 주거 불안, 전세 사기,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을 통해서 임대형기숙사,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국토위에 회부되어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이 심사 경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민간임대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현재 관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크게 이견 없으실 것 같으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3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여 보유 중인  $60m^2$  이하인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일몰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견 있으시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건의 개정안은, 서민주택의 정의가 표에 보시면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m^2$  이하, 취득가액이 1억 원 미만인 주택이 되겠습니다.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안이 되겠는데요. 일몰기한 연장은 서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신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 현황을 보면—감면 건수와 감면액이 뒤 페이지의 표에 있습니다—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이건 2007년에 설정된 연면적 또는 전용면적  $40m^2$  이하, 취득가액 1억 원 미만의 주택이라는 서민주택 기준의 현실 적합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일단 일몰기한 연장에는 동의합니다.

논의 필요 사항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계적으로는 전용면적 40m<sup>2</sup>, 여기에서 서민주택이라고 정의한 40m<sup>2</sup> 이하인 아파트의 경우 중위가격이 한 9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 점을 고려해 주시고, 그 외에도 2007년 이후에 1가구 1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이 들어왔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하는 경우라든지 출생 가구 주택에 대한 감면이라든지 다양한 주택 감면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이쪽 서민주택에 따른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점차 줄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2007년도의 40m<sup>2</sup>, 1억 원 기준이 와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기준을 조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동산은 속칭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고민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서민주택이라고 해서 40m<sup>2</sup>이면 10평 안쪽이거든요. 금액도 1억이고 하면…… 그런 시장으로 몰아내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혜택을 그런 쪽으로 주게 되면. 그래서 그런 정책 방향이 올바른 건가에 대한 고민이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녹아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달희 위원** 보류.

○**소위원장 윤건영** 보류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44페이지입니다.

○**조승환 위원** 잠시만요.

이것 보류로 하더라도 국토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안을 내 주셔야……

○**소위원장 윤건영** 단기간에는 못 낼 것 같아 가지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위원님, 이것은 사실 기본 법안은 일몰 연장입니다.

○**조승환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두 번째, 논의 사항은 그냥 향후에 논의하실 사항이기 때문에요.

○**소위원장 윤건영** 일단 보류해서 보겠습니다. 부대의견을 달 때 달더라도요.

○**조승환 위원** 예.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44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매각·임대하기 위하여 신축·취득하는 일정 요건의 소형주택의 취득세 25%를 경감하고 조례를 통해서 25%를 추가로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인데요.

여기 일정 요건은 2025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신축·취득한 것,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다가구주택, 호별 전용면적이 60m<sup>2</sup> 이하인 주택 이렇게 되겠습니다.

1차 소위원회 논의 사항입니다.

9월 4일 날 있었고요. 이 법안은 경제적 강자일 수 있는 건물 신축자의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가 맞는지 의문이라는 양부남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고요. 작년에 발생한 전세 사기를 고려하면 소급 적용 시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는 이성권 위원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인데요. 개정안을 통해 전세 사기의 여파 등으로 거래량이 감소한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한 자의 조세 부담 능력,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부칙에 있어서는 24년 1월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시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이 되겠습니다. 개정 규정 적용의 기준 시점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로 소급해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구 정비에 있어서는 조문 순서를 정부안과 같이 조정해야 조례에 따른 추가 감면에 대한 추징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이 안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부안 의결을 희망합니다.

지난번에 논의하셨을 때 소형주택 60m<sup>2</sup> 이하의 빌라라든지 다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표에서 보셨겠지만 비아파트, 빌라라든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인허가라든지 착공, 준공이 상당히 많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는 아마 이쪽 부분에 대한 공급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 염려가 돼서 당시 정책으로써,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써 인센티브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 밖에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물어보신 것 중의 하나는 왜 공급자만 하냐 물어보셨었는데요. 이 외에도 수요자, 비아파트를 구매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이미 대통령령으로 저희가 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법률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 공급자, 소형주택을 짓는 분에게 한시적으로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정부안 의결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말씀 중에 부칙 규정을 2024년 1월 10일로 소급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어쨌든 통상 부동산 대책의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가운데 부동산 대책 발표한 시점으로부터 혜택을 드렸다는 것도 함께 말씀 올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 정부가 필요한 지원 대책이 있으면 정부에서 지원하시면 되지 꼭 세제를 건드려서 지원해야 되는 이유를 일단 모르겠고요. 그리고 취득세를 감면해 주면 건설

사가 돈을 벌어 갈지 모르겠지만 그 가격이 분양가격에 반영되어서 빌라 가격이 내려간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실질적인 실효가 있겠나라는 점에 의문이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지금 좀 땅들을 사라 이 이야기지요,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싸게 해 줄 테니까, 세금 좀 깎아 줄 테니까 미리 살 땅들 꼬나보고 있지 말고 후딱후딱 사서 집 좀 지어라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맞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위원장님, 국토부에서 나와 있는데 혹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나와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국토부에서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한성수 과장님 나와 계신데요.

○**국토교통부주택정책과장 한성수** 안녕하십니까?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한성수입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까 김성희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왜 세제를 하느냐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지금 비아파트 시장의 공급이 위원님들 잘 아시는 전세 사기가 나오나서부터 거의 전체 평년 대비 한 10%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90% 정도가 서울 등은 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행안부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연립·다세대·다가구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우리 사회에서 청년 층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막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을 놔뒀다가는 조금 문제가 생기겠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세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청드렸고.

세제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주택도시기금이라고 국토부에서 운용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소형주택을 지을 때 건설자금을 저리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국토부가 할 수 있는 건축 규제라든지 도시 규제라든지 주차장 규제라든지 다양하게 규제 완화를 해 가면서 이 부분을 세제까지 같이 좀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를 감면하면 과연 빌라 가격이 내려가겠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격이라는 게 시장에서 수요·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그것이 바로 가격을 내린다는 것은 저희도 개런티할 수는 없지만 취득세를 내려서 아까 여러 가지 저희가 했던 기금 저리 지원이라든지 세제라든지 도시 규제 완화라든지 해서 공급이 늘어나면, 공급 사이드에서 충분하게 늘어나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희는 하고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임대료라든지 이런 게 내려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견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보시면 건설업자들이 사회적 강자들인데 왜 세제 혜택을 주느냐는 말씀도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형주택을 짓는,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것은 저희가 들어 본 대형 건설업체들이 많이 있지만 소형주택, 연립·다세대·다가구를 동네에서 짓는—저희 국토부는 동네 집 장사라고 부르거든요—그런 분들은 좀 영세합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영세해서 그분들이 골목상권, 골목경제를 좀 불러일으켜서 자꾸 다세대·다가구를 짓고 그래야지 골목경기가 좋아지고 그 주변의 식당이라든지 도배라든지 건설업이 전후방 효과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사업이라든지 임대업도 그렇고 이런 게 다양하게 골목경기가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양 위원님.

○**양부남 위원** 이 법이 시행이 된다면 예상되는 취득세 감면액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 서은주** 지방세특례제도과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 감면액은 내년도 91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91억이요?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 서은주** 예.

○**조승환 위원**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양부남 위원** 내년에는 91억이고 연차적으로 계속 늘어납니까?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 서은주** 일단은 저희가 감면기한을 내년 말까지로 해놨기 때문에 내년에 일몰될 때 부동산시장 상황 같은 것을 한 번 더 보고 연장 여부를.....

○**양부남 위원** 일몰이 연장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이 또 문제가 되겠네요?

○**행정안전부지방세특례제도과장 서은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일단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쟁점들은 나중에 처리할 거니까요.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50페이지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주택건설·공급 사업주체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준공하였으나 미분양된 일정 요건의 아파트를 2년 이상 타인에게 임대 제공 시 24년 말 또는 25년 말까지 취득세 25%를 경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정 요건은 취득당시가액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m<sup>2</sup> 이하 주거용 건축물이고요.

1차 소위원회 논의사항입니다.

지방교부세가 줄어든 상황에서 지방재정의 재원인 취득세를 경제적 강자를 위해 감면시키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양부남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고요.

이 법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법안 적용 시 지방자치단체별 세수 감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박정현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미분양은 민간업자들의 과다한 건설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정부가 그 책임을 떠안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택 미분양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고 취득세 감면은 주택공급 활성화 등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는 조승환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고요.

지방세 30억 원 규모, 부동산 경기 회복 시 투기 우려 및 지방 중소업체의 도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한병도 위원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법률의 소급 적용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지만 국세와 지방세가 함께 가야 한다는 점에서 소급이 필요하다는 조승환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추가적인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에 아파트를 신축한 주택건설·공급 사업주체의 조세부담능력 그리고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만 감면하는 경우에 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그리고 비아파트 등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152페이지의 부칙입니다.

역시 24년 1월 10일 이후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데요. 역시 소급해서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구 정비에 있어서는 조문 순서를 정부안과 같이 조정함으로써 조례에 따른 추가 감면에 대한 추징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안 의결을 희망합니다.

표를 보셨겠지만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1만 4464호가 있습니다. 준공이 다 끝났는데도 미분양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역의 건설 경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건설 경기가 갖는 후방효과, 아까 국토부 장관님도 말씀 주셨지만 하청업체라든지 중개업, 인테리어, 여러 가지 효과 등이 있기 때문에 미분양된 부분들을 임대로 돌려서라도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비수도권에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점도 함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했던 것 중에 대형 건설사들이 혹시 혜택을 보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 지난 번에 있으셨는데요. 실제로 지역 중소 건설사들은 주로 상위 100위 안에 있는 건설사 비중은 한 10%에 불과하고요, 대개는 작은 중소 건설업체라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의견 주십시오.

○**김성희 위원** 차관님, 지금 세제 혜택이 정부 추산으로는 32억 정도라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내년에 한 26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지방 미분양 사태라는 것이 26억을 주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정부의 진짜 대책은 무엇이 있고, 이것은 누가 봐도 그냥 건설사 몇 군데 쌈짓돈 아껴 주는 것도 아닌 정도의 규모인데 이 법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추진할 때는 이것 말고 실제로 미분양과 관련된 정부 대책이 먼저 선행되고 설명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혜택이 있고요. 또 수요자 측면에서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시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정책이 함께 발표됐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면서 전체적인 패키지가 동시에 발표됐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것도 그냥 보류로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말씀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57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저당권 설정

방식으로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율 및 감면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안을 보시면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있고요. 저당권 설정 방식 외에 주택 소유자와 한국주택금융공사 간 신탁계약에 따라 노후연금의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당권 설정 방식으로 담보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율 및 감면한도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일몰기한 연장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신탁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분은 저당권 설정을 통한 가입과 동일하게 재산권 감면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탁 방식을 통해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이 가능해진 2021년 6월까지 소급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옆에 보시면 2021년 6월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에 따라서 신탁계약을 통한 주택담보노후연금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소급 적용을 논의할 때 수혜적, 수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그 시점을 잡기가 어려워서 소급을 주저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시점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등록면허세 감면율 하향 조정 관련해서는 주택연금 대상 확대, 가입 요건 완화에 따른 가입 확대, 향후 확대의 지속가능성과 재산세 감면 신설에 따른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안 의결을 희망합니다.

설명을 드리면,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방법에는 크게 저당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고 신탁을 하는 방법이 새롭게 도입돼 있는 상황입니다. 수석님 말씀처럼 21년도부터 신탁 방식의 주택연금도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신탁도 등록면허세,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게 이번 취지입니다. 그래서 감면대상은 확대를 하고 거기에 드는 비용인 등록면허세는 조금 조정을 해서 지방재정에 미치는 전체적인 영향을 조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의견 중에 만약에 재산세 감면이 되면 21년 그즈음으로 재산세 감면을 소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게 처음으로 신설되는 부분이고 재산세는 사실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하시기 때문에 신설된다는 측면에서 향후 적용이 맞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는 소급보다는 신규로 적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의견 부탁합니다.

○**이달희 위원** 신규 적용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안에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위성곤 위원** 사실 이 혜택은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인들에게 돌아가는 거고, 그런데 굳이 등록면허세하고 감면 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을까요? 현행 유지해도 별 무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저희는 어쨌든 전체적인 세금 차원에서 등록면허세는 수수료

관점에서 보고 있어서 그것은 최대한 감면을 줄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도 일반 주택 저당권 하는 데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등록면허세를 내고 있다는 말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정부 측 안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이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소급 관련해서 정부 의견이 타당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방세특례법을 보면 꼭 일몰기한이 연장될 때 이걸 개정을 하는 것으로, 3년 주기로 돌아오기 때문에 21년 6월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됐으면 그때 바로 이 특례법을 같이 개정해 주는 것이 맞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3년 주기이기 때문에 지금 소급 여부가 되는데 이것을 만약에 2021년 6월 이후에, 이 법 전에 신탁을 통해서 이 주택을 구입하신 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억울할 수가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대상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연장 부분입니다. 9건의 개정안은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의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령층 농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3년을 정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감면 연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65페이지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한국해비타트가 무주택자에게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건축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해비타트가 수행하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사업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 없으면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6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생애 최초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을 25년 12월 31일까지 유상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한도를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표를 한번 보시면요, 감면대상자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자로 현행과 같습니다. 그리고 감면대상이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은 현행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가되는 것이 소형주택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아파트가 제외됩니다. 그래서 연립·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중에서 전용면적 60㎡ 이하, 취득가액 3억 원 이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가구주택이 또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달라지는 것은 현행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에 200만 원 한도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되는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 300만 원 한도로 100만 원이 인상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을 취득하는 사람들에 대한 취득세 감면 확대로 주택 구입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정책 효과 그리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중 서민층을 비아파트 소형주택으로 유인하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가 제출한 의안입니다. 정부 의안을 희망합니다.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예.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생애 최초로 소형주택, 아까 말씀드린 60㎡를 구입하시는 수요자 입장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200만 원까지 가능하던 걸 300만 원까지 한도를 늘렸던 거고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공급자 파트에서도 공급을 늘리기 위한 설명을 아까 드렸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 외에 수석님 아이디어 말씀 중에, 이게 유인 효과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 여기 다가구 다주택, 굉장히 젊은 분들 또 사회에 처음 진입하는 분들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 외에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는 12억 원까지 저희가 별도로 생애 최초 정책이 따로 있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의견 있으시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에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71페이지입니다.

소형·지가주택 매입 시 생애 최초 주택 구입 감면 자격을 유지하는 부분인데요. 2건의 개정안은 임차인으로 1년 이상 상시 거주한 전용면적 60㎡ 이하 그리고 취득당시가액 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 감면을 받고 취득한 사람이 향후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보아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격을 유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차 소위 논의사항입니다.

개정안은 결혼하지 않고 자력을 갖춘 40대 초반 등에게 큰 조건이 될 수 있어 보이므로 확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조승환 위원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역전세 현상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완화를 위해 부득이하게 해당 주택을 구입하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았더라도 해당 매입 결정의 비자발성을 고려해서 생초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임차인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통상 전세계약 기간이 2년 정도인 점, 동일한 대책에 포함된 소형·저가 임차주택 매입 시 청약 무주택자 지위 유지도 1년의 거주요건을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최소 1년 이상의 거주요건 설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안 의결을 희망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이분들이 구입하는 경우에 생애 최초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에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8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의 하나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소유한 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지역으로 판단되는 단위 구역 중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을 ‘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이 없는 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중에 정부 측 의견에 이견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므로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84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행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1년이 남아 있고 동 감면규정을 시행할 기간이 1년 정도여서 정책 효과 등을 검증한 이후에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면한도 상향 또는 폐지 관련해서는 출산·양육 가구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필요 그리고 감면한도를 두지 않을 경우에 고가의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있는 가구가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게 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가구 1주택 요건 폐지의 경우에도 개정안을 통해서 1가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가구가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제도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전체적으로 신중 검토입니다.

이 제도는 작년에 여기 행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당시 내용이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하시는 1가구 1주택에 대해 최대 500만 원까지 혜택을 드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발의된 내용이 감면대상을 15억 원 주택으로 높이고 감면한도를 800만 원까지 높이는 것입니다. 지난 심의 때도 전체적으로 고민이 되었던 부분이, 결국은 고가 주택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 지난 심의 때도 있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내용이 내년 25년도에 일몰이 됩니다. 그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에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8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생업용 차량 및 기계장비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 극복,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감면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개정안은 감면대상자의 요건인 ‘피해’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측면이 있고요. 감면대상인 생업용 차량 및 기계장비의 취득기한을 한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신중 검토입니다.

현재도 재난 피해를 입은 건축물, 차량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적용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가 그렇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만, 어쨌든 재난 피해와 관련 없는 모든 차량이라든지 기계장비를 감면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불분명한 면이 있어서 그러한 점은 고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에 이견이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91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국립대학교병원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국립대병원 등의 취득세 및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서 국민 보건의 증진 및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3년으로 정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연장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95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 3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에 이견이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98페이지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재단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종교단체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조정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요, 감면대상자는 재단법인이 되고요. 감면대상이 재단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인데요. 감면 내용에서 나뉘게 됩니다. 종교단체인 재단법인은 취득세 30%, 재산세 50%입니다. 종교단체가 아닌 재단법인은 취득세 15%, 재산세 25%로 종교단체인 재단법인의 절반 수준이 되겠습니다.

박정현 의원님 안 같은 경우에 모든 재단법인의 감면율을 취득세 30%, 재산세 50%로 해서 맞추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몰기한 연장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요.

비종교단체 재단법인의 감면율 상향 조정 부분입니다. 종교단체가 아닌 재단법인과 종교단체인 재단법인 모두 국민건강보험 체계 아래에서 국민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면액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것은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단법인이 종교단체인지 여부가 취득세·재산세 감면의 차별적 근거가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99페이지의 표를 보시면요, 의료기관 설립 주체별로 지방세 감면율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취득세 감면율이 15~75% 수준이고요. 재단법인과 종교단체인 재단법인이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재산세 감면율도 세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5, 50, 75인데 재단법인만 25% 감면을 받고 있음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일몰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의 취득세를 확대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 내용이 지난해 행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처음으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당시 논의하시면서 종교 법인 논의를 하셨고 거기의 반 수준인, 30이어서 15로, 50이어서 25로 감면율을 그 당시 설정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된 지 아직 1년 정도 된 사항인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박정현 위원님.

○**박정현 위원** 제가 낸 법안이라서 세 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검토의견서에서도 나왔지만 이건 조세형평성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종교 법인의 경우는 더 감면받고 종교 법인이 아닌 재단법인의 경우는 덜 감면받는다는 것은 이것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규정을 한 자체가 저는 조금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의료 대란 때문에 사실은 의료법인들이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수익성 악화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같이 맞춰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세 번째는 실제로 감면 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비종교단체 재단법인이 225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감면 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재투자 등을 통해서 오히려 세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법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우선 이 법 보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 이걸 논의할 때 상당수 위원님들은 지금의 종교단체 재단법인과 동일하게 30과 50을 하자고 하셨는데 행안부에서 1년을 먼저 한번 해 보고, 일단 시작을 15에서 25로 해 보고 1년 후에 재논의하기로 했는데 지금 1년밖에 안 돼서 이걸 못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정현 위원** 맞아.

○**소위원장 윤건영**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지방의료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시 안정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통상 3년으로 정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206페이지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국민건강 증진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3년으로 정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일몰 연장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쉬었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여기까지…… 하나 남았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개정안은 대한적십자사가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역시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성곤 위원 좀 더 깎아 줍시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통상 3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도……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동의하시고 위원님들도 이견 없으시면……

(「예」 하는 위원 있음)

여기까지 처리하고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심사가 계속 중이나 잠시 정회했다가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윤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소위 자료 5-2권을 계속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지금부터는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연번 42-⑦이 되겠습니다.

2건의 개정안은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좋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일몰기한은 통상 3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일몰 연장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9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사립학교법인과 국립대학법인의 설립등기, 합병등기, 변경등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3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혹시 이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1페이지, 2건의 개정안은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안정적으로 의료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도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4페이지입니다.

4건의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행복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행복기숙사 건립 운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보이고요. 참고로 일몰기한은 통상 3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7페이지, 3건의 개정안은 학생의 실험·실습용 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 등에 대한 지방세 면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3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이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3년 연장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20페이지, 연번 45번입니다.

4건의 개정안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몰기한은 통상 3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3년 연장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므로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23페이지입니다.

4건의 개정안은 평생교육시설, 전공대학, 공공직업훈련시설에 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몰기한 연장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통상 3년입니다.

감면대상 확대 관련해서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며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등을 준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와 동일한 수준의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것이 형평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3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과학관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별도 추징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일몰 연장은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통상 3년입니다.

추징 규정 신설과 관련해서는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의 특성을 고려한 추징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세 특례의 합리적인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가 제출한 안입니다. 정부안 의견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39페이지, 연번 48번입니다.

개정안은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2034년까지 면제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림교육체험시설의 지방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또 시민에게 산림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림교육체험시설이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은 예산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 및 유료로 운영되는 박물관·미술관·과학관에 대한 감면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산림교육체험시설이 대부분 유료로 운영되고 있고 민간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사업체가 다수인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박물관 정도 수준으로 하는 건 어떻습니까? 박물관도 100%인데……

○소위원장 윤건영 답변 가능하신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박물관 수준……

○위성곤 위원 박물관, 미술관도 전부 다 수익시설이지요, 거의 대부분이 공공이 제공하고 있지 않은,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위성곤 위원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해서 내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하시지요.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이것은 보류로 하고 의견을 받아 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42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및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3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감면 연장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색건축의 인증등급 및 에너지효율등급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취득세·재산세 감면 비율을 상향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취득세 감면 비율을 상향하려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친환경 건축물 보급 및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녹색건축의 인증등급이 우수 이상이며 에너지효율등급이 1+ 등급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형평성 측면에서 18년 감면을 종료하였다는 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20년 12월 31일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전체적으로 신중 검토 의견입니다.

18년도에 재산세 감면을 정비하였고 또 20년에 취득세 감면율을 상향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의견 있습니다. 저는 김영배 의원안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류해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보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건의 개정안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 중 2건의 개정안은, 윤건영 의원님 안과 정부안은 볍령상 내진보강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임에도 건축 또는 대수선 시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경우에 취득세·재산세 감면 신설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0페이지에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하나는 지진안전 인증 건축물 감면인데요. 현행은 신축 그다음에 윤건영 의원님 안과 정부안은 건축 및 대수선으로 확대를 했고요. 감면 내용은 취득세 5~10% 동일합니다. 중복감면 관련해서는 현행은 불가하지만 정부안에서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요. 사후관리로 정부안과 윤건영 의원님 안은 3년 이내에 지진안전 인증이 취소된 경우 추징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 감면 관련해서는 감면대상은 현행과 같고요. 감면 내용은 취득세 및 재산세 50%, 대수선은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였습니다. 이것이 취득세 면제 그리고 재산세 면제인 윤건영 의원님 안과 취득세를 과표공제하고 재산세를 50% 면제하는 정부안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 감면 관련해서는 21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종료된 것으로서 지금 윤건영 의원님 안과 정부안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부분입니다. 일몰기한 연장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3년이고요.

감면대상 확대의 경우에는 신축 외에도 대수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진성능 평가 및 인증 수수료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 감면 신설 관련된 부분인데요.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내진성능 확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내진성능이 있는 건물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건영 의원님 안은 정부안과 비교해서 감면 규모가 크다는 점에서 내진성능 확인을 받는 데 보다 큰 유인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겠고요. 정부안은 내진성능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만 공제해 줌으로써 지방세수의 지출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안 의견 희망합니다.

우선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건축물 관련해서는 일몰기한 연장이 필요하고 또 감면대상도 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진성능 확인 건축물 감면과 관련해서 정부안에서는 어쨌든 내진시설을 보강하면서 필요했던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의견 없습니다.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조승환 위원 유독 여기서만 과표공제로 하는 이유가 뭐가 있지요? 왜 그렇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내진성능을 시설로 보강하다 보면 실제로 내진에 보강되는 비용이 있고 다른 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

으로 다 감면하기보다는 직접 내진보강에 필요한 것만 과세표준에서 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것 제가 낸 법이라 제가 길게 설명하기가 좀 거시기해서 그런데요, 일단 보류하시고 이것은 제가 내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57페이지에 3쪽지는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58페이지, 연번 52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신문·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운영을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현행 규정과 같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신문·통신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감면대상에 인터넷신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가 제출한 의안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사업, 크게 세 가지 종류에 대한 논의입니다.

일단 신문의 경우에는 현재처럼 연장이 필요하고요. 뉴스통신사업의 경우에도 여러 법령상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민되는 지점이 인터넷신문,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 주신 인터넷신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1만 1698개의 인터넷신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감면대상으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조금 논의를 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박정현 위원** 좀 보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윤건영** 이것도 보류로 넘어가겠습니다.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6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사업에, 체육단체가 체육진흥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6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민신탁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자산의 취득·보전·관리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65페이지부터는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특례가 되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연번 55번-⑦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법인 적격합병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간의 합병과 기술혁신형 사업법인과의 합병을 제외한 일반 법인 간의 합병에 대한 감면을 종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간 합병 등 외 합병에 대한 감면의 일몰 종료 부분입니다. 기업 간의 합병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장에서 기업이 경영 판단에 따라 추진한다는 점, 그리고 중소기업 간 합병·기술혁신형 사업법인의 경우에는 합병의 촉진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정부안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7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조문대비표인데요. 여기에 좀 특이한 규정이 있어서……

8조인데요. 정부안 8조에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추징에 관한 적용례 등’인데 3항을 보시면 이 법 시행 전에 합병계약 또는 분할계획에 대한 주주총회·사원총회의 승인결의나 총사원의 동의가 있었던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사업용 재산을 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그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추징에 관해서는 57조의2항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해서 기존 감면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간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대상의 표현을 ‘사업용 재산’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사업용 재산으로 개정해서 용어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77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법인의 분할로 취득한 재산,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에서 국유재산법에 따라 현물출자한 재산은 제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몰기한 연장 관련해서는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 분할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 50% 하향 조정 부분은 기업 간의 합병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시장에서 기업의 경영 판단에 따라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해서 취득세 감면율을 하향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78페이지, 정부가 정부출자기업에 현물출자한 재산의 일몰 종료 부분은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 국가 정책사업 지원을 위해 장기간 지원해 왔고 감면액도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업용 재산으로 명확히 하는 것은 용어를 통일성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법인 분할의 경우 감면 도입 이후 사회적 환경이 변화된 점 그리고 행정행위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인 조세 감면을 지속 정비해 온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유재산 현물출자의 경우에는 도입이 65년도에 됐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지원을 해왔고 감면 규모가 한 3억 정도에 불과해서 이것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혹시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8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법인 전환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 등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75%에서 50%로 하향 조정하고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인 전환을 지원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지원할 필요성을 반영한 적정한 감면율에 대한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가 제출한 안입니다. 정부안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88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부실금융기관 등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지주 간주취득세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몰기한 연장 같은 경우는 부실자산 정리 등을 위한 정부의 정책 수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 상장 법인의 취득세 감면 삭제는 지방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의 범위에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법인이 제외되어 있던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안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정부안에 이견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9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기업의 법인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등록면허세 감면대상을 사업재편에 따라 설립 또는 변경하는 법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몰기한 연장은 사업재편계획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 감면대상 법인의 명확화 부분은 사업재편 결과로 설립되거나 변경되는 법인이 감면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감면대상 법인을 명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결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9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 간 합병 시 양수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등록면허세 감면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일몰기한 연장 관련해서는 금융기관의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등록면허세 감면 종료와 관련해서는 일반 법인합병의 경우 등록면허세를 지원

하지 않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앞에서 논의한 개정안 제57조의2제2항에서 농업협동조합 간 합병 등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성격을 어디와 비교하느냐 문제겠는데, 일반 법인합병과 비교하느냐 아니면 농업협동조합 등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가 제출한 의안입니다. 등록면허제 감면을 종료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현행 등록면허제가 25%인 것을 정부안에서는 그 조항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 은행하고 농협·수협 조합이라든지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느냐의 성격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농·수협의 경우에는 농민·어업인·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금융과는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농·수협 조합 같은 경우에는 인수합병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조승환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안에 이견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00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 및 부실조합 등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3년으로 정해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정부안 의결을 희망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적기시정조치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혹시 이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0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대행 의뢰·수임 받은 재산의 매입 시 취득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동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연장이 필요합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예.

위원님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07페이지입니다.

3건의 개정안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40% 이상 출자·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으로 취득한 기존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사업장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5년 12월 31일까지 50% 경감하는 내용입니다.

1차 소위원회 논의 사항입니다.

PF정상화펀드는 사업이 잘되면 많은 수익을 얻는 경제적 강자인데 경제적 약자를 살리기 위한 예산지원을 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강자에 대한 세금 감면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으셨고요. 양부남 위원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지방교부금의 삭감에 더해 지방세를 감면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수립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정춘생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고요.

PF는 단기간에 고수익을 벌어들이는 투기·투자의 방법으로 사용되는데 지방세 감면은 고이자율을 받아 가던 사람들이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에 대한 우려를 김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PF정상화펀드는 망해 가는 PF를 사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적인 성격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 PF와 성격이 다르다는 조승환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셨고요.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산관리공사가 결정권을 가져야 하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40% 투자를 하면 지배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이 한병도 위원님께서 있으셨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부동산PF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PF시장의 현 상황, 지원의 효과성 및 특혜 여부, PF정상화펀드 공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과밀억제권역 내의 취득세 중과배제에 관련해서는 권영진 의원안은 중과를 부과하고 송언석 의원님 안은 2항에 대한 중과만 배제하는데 정부안은 2항 및 3항에 대한 중과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수행 지원을 위한 PF정상화펀드로 부동산 취득 시 중과배제 여부 및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부칙 관련해서는 개정안이 의결이 된다면 PF정상화펀드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PF 소유의 토지를 매입한 사례가 1건 이미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급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이 내용은 PF의 부실한 여러 가지 사업자 중 정상화가 가능한 PF를 말 그대로 살려서 그 지역경제라든지 그 건설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PF 정상화를 위해 가지고 일종의 공적 기구인 캠코가 참여를 하게 되고요. 민간 부분도 일정 부분 참여하게 됩니다. PF정상화펀드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견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 측 의견에 이견 없으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13페이지입니다.

감면대상에 친환경산업 관련 업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인데요. 2건의 개정안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업종에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농어업, 친환경주택,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친환경산업과 관련된 업종을 추가하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제외 업종인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의 명칭을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친환경산업 업종 추가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신·재생에너지 등과 관련된 업종의 창업을 촉진하고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관련된 업종을 정하면서 업종을 제한하지 않고 있어서 해석에 따라서 그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기회발전특구 내에서는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는 정부안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물류산업 같은 경우에는 한정하는 방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산업을 업종을 추가한다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의 일치가 되신다고 하면 관련 업종의 범위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환경산업' 이렇게 자구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중개업의 명칭 변경은 현행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 감면을 하는 업종이 어디인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안 중의 하나는 친환경 등의 업종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있고 정부안은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게 통일성, 국세와의 일치를 위해서 거기에 명칭을 통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종 추가와 관련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에 따라 감면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신중한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업종의 명칭 변경으로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관련해서는 국세와의 일치를 위해, 통일적인 세정 운영을 위해 일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위성곤 위원 친환경산업에 대한 육성이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관련되어진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정부 측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에 이걸 넣느냐 안 넣느냐라는 것과 업종의 확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관련 사항을 좀 조사해서 정리를 해서 내일 법안 심의에 가져오시면 심의를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일단 보류를 하고 방금 뭐……

김성회 위원님.

○김성회 위원 저는 57번, 아까 전에 제가 지난번에 냈던 의견이 있어서 말을 안 한 건데요. 그래서 정부안에 찬성한 게 아니라……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면 107쪽에 나와 있는 57번 안건에 대해서도 보류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성회 위원 예.

○소위원장 윤건영 정리하겠습니다.

57번 안건, 107쪽 안건도 보류고요. 113쪽의 58번 안건, 방금 위성곤 위원님 요청하셨던 자료들 함께 해서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회 위원 그러니까 57번 같은 경우도 양부남 위원님, 저, 한병도 위원 의견 제시를 했는데 차관님이 지금 관련된 내용에 대한 아무런 해명이나 답변이 없으셔서 그것도 내일 좀 같이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예,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18페이지입니다.

광업권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연장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몰기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업권을 가진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광업 운영을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연장이 필요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위원님들 120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면 123페이지입니다.

4건의 개정안은 국제선박, 연안항로 화물운송용 선박, 외국항로 선박 중 천연가스 연료 선박에 대한 지방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종료하고 연안여객선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 페이지 124페이지의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분 보시면 지금 크게 3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국제선박, 연안항로 취항 화물운송용 선박 및 외국항로 취항용 선박, 천연가스 화물운송 선박입니다.

정부안을 먼저 보시면 국제선박 같은 경우는 그냥 일몰기한만 연장하는 거고요.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위성곤·배준영 의원님 안의 경우에는 현행에다가 추가로 연안여객선을 추가하는 것이 되겠고요. 정부안은 일몰기한 연장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천연가스 화물운송 선박의 경우에는 정부안의 경우에는 종료, 일몰 종료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23페이지의 일몰기한 연장의 경우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124페이지의 천연가스 연료 선박에 대한 일몰종료 부분은 친환경적 선박에 대한 인증 등급별 취득세율 차등 감면을 신설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안항로 여객운송용 선박 감면 신설 부분은 앞에 개관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예로 든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의 공익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연안여객운송사업자가 신규 선박의 도입 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도서·해안 지역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 사업자의 재정부담능력, 조세부담능력에 있어서는 조합의 입장에서 상당히 영세하다는 예로 2척 이하의 보유 선사가 전체 사업자 약 52% 수준이다, 신규 선박 도입은 50억에서 500억 이내 비용으로 상당히 큰 부담이 된다는 예를 제시하였습니다.

타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비교대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연안화물운송사업자입니다. 연안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율 1% 감면 및 재산세 50%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대중교통인 버스운송사업입니다. 신규 버스 취득 시 취득세 감면이 일반 버스는 50%, 천연가스 버스는 75%, 전기·수소 버스는 100% 감면이 적용된다는 고려를 할 때 연안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신설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국제선박하고 천연가스 화물운송 선박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희망하고요.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마 연안항로 여객선, 연안여객운송사업에 대한 감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지방세법적인 차원에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법상 교통이기는 합니다만 과연 버스나 철도와 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비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자체에서 아마 3년간 향후 한 100억 원 정도 감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는 의견이 지금 좀 다르게,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재산세라고 하는 게 기초의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라는 점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세법 업무 절차적으로는 감면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타당성검토를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절차도 조금 고민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세 특례 원칙 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이중성에 대한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연안여객선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보조금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 사항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조승환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성곤 위원 예, 말씀하시지요.

○조승환 위원 차관님, 연안여객선 부분이 우리가 사실 아픈 기억부터 반추해 내자면 세월호 사고 이후로 해서 사실 연안여객사업자들한테 계속적인 부담만 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재밌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선령 제한 규정 같은 경우에도 다른 국제항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전혀 선령 제한을 안 하는데 지금 연안항로에 다니는 배들은 선령 제한도 하고 있고 이거에 따라서 대체선박을 의무적으로 내년도에는 넣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SOC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사실 선박의 부분은 저는 도로를 깔아 주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정책적, 좀 더 범정부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들 이야기하세요. 자기 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왜 연안여객선이 있어야 되느냐부터 시작해서 이용률이 낮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지만 자가용 있다 그래 가지고서 버스 안 넣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차원에서 조금 봐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연안사업자들이 어떻게 보면 과거의 부분은 이런 부분들에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로,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승객 회복이 도저히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저는 이런 상황에서 가면, 저는 지방세·취득세·등록세 완화 부분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서라도 별도의 어떤 사업 구조를 바꿔 주는 형태로 가야만이 지금 우리나라 연안항로에 여객선들이 다닐 수 있지 조만간에 다 문 닫고 이것 정부에서 결국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적으로 떠맡아서…… 떠맡는다는 표현도 좀 이상합니다만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도 연안여객 부분에서 사업구조를 좀 바꿔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입법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굉장히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받쳐서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거의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운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거냐 하면 여객선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손님이 자기 교통비를 깎아 주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실제 선사 지원은 하나도 안 되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리고 대중교통, 사실 연안여객선이 끊기게 되면 다닐 수가 없는, 그래서 선사를 유지하고 해야 되는 입장이 있는 거지요. 우리가 섬 발전법을 만들어서 섬 지역을 유인도화시키는 이유들이 있는데 섬을 유인도화시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국토의 균형적 발전 때문이지요, 관리 때문에.

결국은 그곳에 드나들려면 여객선이 필요한데 여객선사들의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부분과 지켜봐도 큰,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정도 지원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정안전부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배준영 위원님 이야기하시고.

○**배준영 위원** 차관님, 대한민국 어느 곳에 살든지 대중교통은 공평한 처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전제에는 동의하십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예, 충분한 이동권은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준영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저 같은 경우도 옹진군이 저희 지역인데 백령도 같은 데는 배를 타고 가는데 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카페리라든지 연안여객선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수익이 안 맞아요.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지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준공영제를 통해 갖고 정부에서 보조를 이미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대전제 때문에 정부가 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차관님 말씀하셨다시피 대중교통이 됐지 않습니까? 법에 그렇게 규정됐다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천항에서 백령도까지 갈 때 222km예요. 익산까지 가는 것도 222km입니다. 똑같은 국토를 달리는데 어느 것은 6만 원 넘게 내고 어느 것은 불과 1만 원대라든지 이 정도 내는 게 안 맞는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준공영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적자 항로를 메워 주고 하는 것은 그런 취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형평성 차원입니다. 우리가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버스라든지 철도라든지 다 방금 말씀드린 세금 감면해 주고 있잖아요. 취득세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것에 저는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이 철도랑 버스랑 하고 여객선은 좀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도서민들은 섬에 들어가는 방법이 배 타고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도서민의 입장이 되시면 왜 다른 측면에서 봐야 된다는 건지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안여객선을 특별한 대우를 해 달라는 게 아니고 대중교통이라고 정부에서 인정을 했다 그러면 그에 맞는 공평한, 말하자면 세제 혜택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125페이지에 정리가 된 내용과 같이 ‘연안여객운송사업자와 같이 대중교통에 해당하는 버스운송사업자는 신규 버스 취득 시 취득세 감면 50%(일반), 75%(천연가스버스), 100%(전기·수소버스)가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안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앞에 보면 연안여객선사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그러기 때문에 신규 선박을 구입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도서민들이 피해를 봐서 배를 적절하게 이용하지 못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정부의 지원금도 늘어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 부분은 보류로 하고요. 내일 차관님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32페이지입니다.

연번 61번이 되겠습니다.

3건의 개정안은 국제항공운송사업 등에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항공운송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투자를 지속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 단서는 본문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개정안 단서를 삭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문대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시면 ‘다만’ 부분이 현행에 보이실 텐데요,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재산세’ 본문과 동일합니다. ‘5년간’ 동일합니다. ‘100분의 50’ 동일합니다. ‘일몰기한 24년 12월 31일’까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단서를 삭제하는 것이 법 해석상 훨씬 더 명확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일몰기한 연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이 단서 조항에 대해서는, 이 단서 조항을 적용받고 있는 항공사가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의 항공사에 해당되는 규정입니다. 나머지 본문에 있는 규정은 어찌 보면 중저가 항공사에 대한 규정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을 고려해서 이것들은, 일단 단서 조항은 존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과 정부의 차이는 단서 조항인 것 같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단서 조항 좀 더 말씀, 법체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입니다. 완벽한 포괄위임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서 조항 자체의 구성도 약간의 문제가 있고요.

지금 본문으로 되는데 지금 이 단서를 살려 두게 되면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를 대통령령으로 유지를 하게 되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본문과 단서를, 단서를 둔 이유는 예외 규정을 두기 위한 건데 이 예외 규정의 의미가 없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체계적으로 볼 때는 단서가 없는 것이 더 맞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 부분은 조금 내적으로 의논을 하셔 가지고 내일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하고, 내일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35페이지입니다.

8건의 개정안은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일몰 종료하고 전기·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전기자동차의 감면한도를 27년부터 축소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136페이지의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먼저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경우는 의원님들의 경우에는 일몰기한의 연장 부분이고요, 정부안의 경우에는 일몰 종료라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현재 감면율이 100%, 140만 원 한도입니다. 의원님들은 일몰기한 부분이고요. 정부안은 2027년 100%, 100만 원 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소자동차의 경우에는 감면율이 100%, 140만 원 한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몰기한 부분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 연장 부분은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의 보급목표를 달성하고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며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여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입니다.

하이브리드자동차 취득세 감면의 일몰 종료 부분은 25년 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목표 150만 대를 이미 달성하였다는 점,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누적 보급 대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의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자동차의 총수명 고려 시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전생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7.5tCO<sub>2</sub>-eq으로 내연기관차의 생애 배출량 34.3tCO<sub>2</sub>-eq보다 낮아서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 축소 부분은 24년 1월에서 9월 기준 전기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6.5% 감소하였다는 점, 감면한도를 유지하면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다수의 법안이 제출되었다는 점,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12년 도입된 후 12년간 이루어졌고 그 사이 누적 등록 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하이브리드에 대한 일몰 종료 부분과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 한도 축소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감면 종료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감면율은 100%입니다만 감면한도가 40만 원입니다. 09년도에 처음 도입된 이후 그 당시에 140만 원부터 도입이 됐고 현재 40만 원 한도로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 있는데요.

워낙 그 사이에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 왔고 또 이미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과거 19년 정도에 하이브리드 관련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취득세 감면한도를 축소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하이브리드 판매량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감면을 종료해도 괜찮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인 경우에는 저희는 지금 최대 140만 원까지 감면한도가 있는 것을 2년 연장 후에는 100만 원으로 축소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전기자동차인 경우에도 전기자동차가 계속 연평균 50% 이상 성장을 해 왔고 어느 정도 정책적인 목표도 상당 부분 달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를 고려하셔서 정부가 낸 안이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하이브리드 차가 2025년도 보급목표를 달성했다고 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을 위한 이산화탄소 저감 목표가 상당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그래서 이 분야라도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전기자동차 감면율도 지금 14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감면한도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140만 원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수소자동차 관련해서도 감면이 현행과 같이 2027년까지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동차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이브리드와 전기자동차를 확대하지 않으면 이산화탄소 저감목표 NDC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이건 그냥 보류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저도 빨언……

○**소위원장 윤건영** 말씀하실 것 있으면, 배준영 위원님 하시고……

○**배준영 위원** 위성곤 위원님 하신 말씀에 저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일몰을 한꺼번에 종료한다기보다는 다른 의원님들 안대로 좀 여지를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현 위원** 저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탄소배출량 1위가 수송 부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정책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전기자동차가 확대되어야 되는데 최근에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해서 약간 문제가 생겨서 이게 오히려 축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감면한도를 더 높여야 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유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보류 안건으로 놓고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4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노후경유화물차를 폐차한 후 새로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 면제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후경유화물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해서 노후경유화물차의 조기 폐차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배출가스 4등급·5등급의 경유자동차 등의 폐차 시 기본보조금을 지급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추가보조금을 지급해서 차량 잔존가치 지원잔존가격을 지원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47페이지에 보시는 표와 같이 09년과 17년도 노후경유차를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취득세를 감면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입니다.

우선 노후경유차 관련해서 폐차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현재 환경부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2600억 원 정도를 보조금으로 주고 있고요. 2017년도에 취득세 감면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보다 2018년도에 경유차 등록 대수가 오히려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취득세 감면에 따라서 경유차가 탄력적으로 움직인다기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반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자는 의견입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인데요.

저는 노후경유화물차를 다시 구매하는 경유차 방식은 지원할 필요가 없지만 노후경유화물차인 경우 전기차로 대체하는 경우는 좀 더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소위원장 윤건영 다른 위원님.

## ○박정현 위원 보류하시지요.

## ○소위원장 윤건영 보류할까요, 박정현 위원님?

보류하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49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경형 승합·화물자동차 및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며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를 축소하고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몰기한 연장 관련해서는 구매를 촉진하고 전방조종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0페이지의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한도 축소 부분입니다. 경형 승용자동차 구입 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 그리고 04년 경형 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도입돼서 20년간 장기간 지원해 온 점, 전기 또 전기수소자동차의 개발·보급으로 친환경적 성격에 대한 경형 자동차 지원 취지가 약화된 점, 그리고 최근 두 차례의 감면한도 변화에도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경형 자동차의 점유율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우선 종합적으로는 정부안 의결을 희망합니다만, 쟁점이 경형 자동차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20년 동안 지원을 해 왔고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무공해 차량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소득별로 저소득층일수록 경형차를 보유한다는 것에 대한 인과관계는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고요. 주로 경형, 작은 자동차가 첫 번째 자동차인 경우도 있습니다만 두 번째 세컨드 카인 경우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에 따라서 감면 내용을 조금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의견 주십시오.

○**조승환 위원** 정부안에 동의합니다.

○**김성희 위원** 이견 없습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안에 이견이 없으시면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54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건설기계 및 수출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중고항공기·중고선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장과 관련해서는 중고자동차, 건설기계 매매업자 및 중고항공기 등 매매업자의 지방세 부담 완화 및 시장 안정화, 수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155페이지 참고 3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액 상위 10개 항목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시면 전체 감면액 총계가 7조 1173억입니다. 이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매매용 및 수출용 중고자동차 등의 감면입니다. 총 1조 3000억이 되겠습니다. 18.4%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전체적으로 일몰을 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수석전문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중의 하나가 이 중고차에 대한 감면인데요. 약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전체 감면액의 상당 부분인 18%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감면이라고 하는 게 어려운 분들 또 힘든 분들에 대한 것 쪽에 조금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조금 고민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왜 감면을 해 주는 거지요? 이유가 뭡니까?

○**소위원장 윤건영** 감면의 시작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중고매매상 입장에서 일시적으로 그 자동차를 취득을 하시게 됩니다, 중고를 다시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어쨌든 취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세목상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그 일시적인 취득에 대해서 감면을 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향후에 또다시 검토를 하시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최저한도 200만 원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승환 위원 이 부분은 세제적인 측면에서만 볼 부분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있단 말이지요. 중고자동차 매매상에 가면 명의 이전을 해 가지고 넘기고 하는 게 지금 안정화되어 있는데, 이 제도 하기 전에는 우리가 잘 기억해 보시면 중고차 팔려 가면 명의를 자기네들이 안 가져가고 바로 넘기는 형태로 해 가지고 중간에 사고가 난다든지 이랬을 때 어떤 선의의 피해자, 국민 부담이 오는 이런 측면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지방세라는 측면 말고 다른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저는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어쨌든 오늘 쟁점은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부분이고요. 일몰기한 연장에 동의합니다.

○조승환 위원 그렇지요. 그것 동의합니다. 3년 연장하자는 거잖아요.

○위성곤 위원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게 맞는 건지, 세액을 100% 다 면제해 주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들어서……

실제 이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처럼 1조 3000 억이나 감면되는데, 세입 규모가.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아마 맨 마지막 안건 중에 관련 내용도 한 번 더 있습니다만 최소납부제라고 해서 200만 원의 캡이 씌워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늘려야 된다는 의견도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황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이건 보류했다가 공부 좀 하고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윤건영 그러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58페이지입니다.

4건의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및 전기·수소버스의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천연가스버스의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일몰 종료하며 전기·수소전기택시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기택시 감면과 관련해서는 역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는 보입니다. 다만 택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에 해당하지 않고 버스와 비교하여 취득가액이 낮은 점 등 버스와 차이가 있다는 점, 전기자동차 구입에 대한 감면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 일몰 종료 관련해서는 친환경 차량 지원 정책의 틀 내에서 천연가스버스가 차지하는 위상 등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일단 노선버스, 택시,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일몰에 대해서는 3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기택시 감면 신설과 관련해서는, 전기·수소택시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신설은 버스와 비교를 하고 계신데요. 버스는 말씀 주신 것처럼 대중교통에 해당이 되고 버스 가격이

3.5억 원, 4억 원, 상당히 높습니다, 택시에 비해서. 그 점과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아울러 감면에 따른 지방재정 여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택시의 경우 전기택시인 경우에는 전기에 따라서 감면을 받고 있고요, 일반택시인 경우도 50% 감면이 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버스, 흔히 말하는 CNG 버스인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간 지원이 됐습니다. 2011년부터 지원이 됐고 이게 종료되더라도 노선버스 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일몰을 종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부탁합니다.

정부 측 안에 이견이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16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물류단지사업시행자가 감면받은 취득세·재산세의 추징 사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감면된 취득세·재산세가 당초에 목적한 것과 같이 물류단지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률 제26조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가 추징 사유로 추가되는데 개발이 완료된 물류단지가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하여 물류단지 재정비 사업을 하는 경우 물류단지 기능 수행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추징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168페이지 조문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지금 1호에 보시면 ‘26조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26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되는 경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정부 측 의견 부탁합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기동**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윤건영** 위원님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수정의견대로 처리하고요.

이 정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금일 1소위 법안 심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에서는 오늘 다하지 못한 특례제한법 5-3권과 지방교부세법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일차 심사가 끝나면 보류 안건들을 논의해서 내일 의결까지 마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위원님 여러분, 법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고 차관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공무원 여러분들,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공무원 여러분들, 국회 보좌직원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

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

○출석 위원(9인)

김성희 박정현 배준영 양부남 위성곤 윤건영 이달희 조승환 한병도

○첨가 위원(2인)

이성권 정춘생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행정안전부

차관 고기동

지방세제국장 김성기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한성수